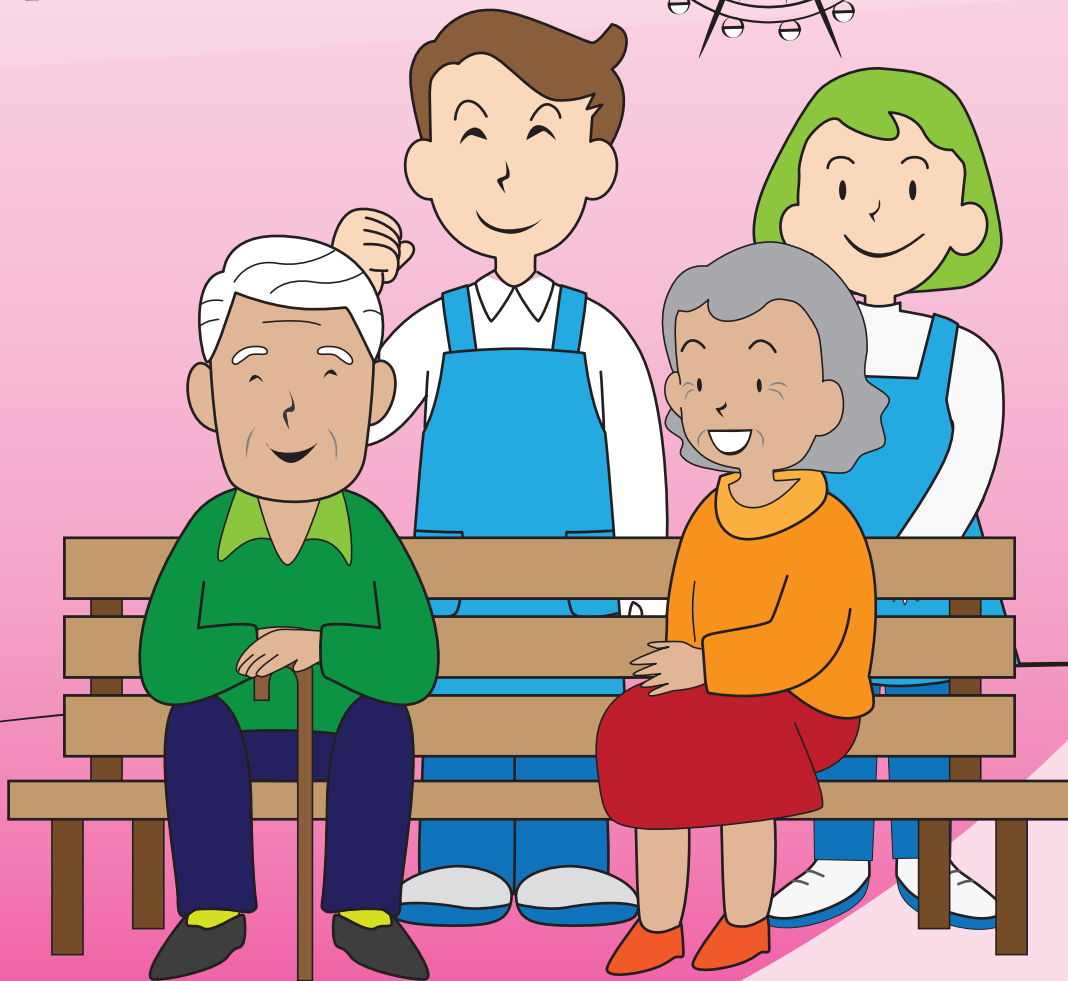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종합 안내 팸플릿

2015 년도판

YOKOHAMA



요코하마시

ハンゲル

요코하마시의 제6기 고령자 보건복지 계획, 개호보험 사업 계획

개호보험은 시초손(市町村)이 책정한 개호보험 제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종합 계획인 개호보험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호보험 사업 계획은 고령자분을 위한 보건복지 사업의 종합 계획인 고령자 보건복지 계획과 일체적인 계획으로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제6기 계획 기간 : 2015년도~2017년도)

본 계획에서는 기본 목표를 수립하여 기본 목표를 지향한 시책의 전개와 앞으로 필요해지는 개호 서비스 예상량의 추계를 바탕으로 본 계획 기간 중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분에 대한 개호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제6기 계획은 1948년을 전후로 태어난 세대가 만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응시하여 단계적으로 개호 서비스의 내용을 확충하게 하고, 고령자를 보살피는 지역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요코하마 지역 포괄 케어 계획”으로서 책정했습니다.

《 기본 목표 》 “평생 현역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여 고령자분들이 활약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와 친숙한 지역에서 자신답게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는 요코하마형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전개합니다

1 활기차게 활동적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 건강 수명 일본 제일을 목표로 건강 증진하기
- 개호 예방 사업 추진하기
- 지역사회에서 활약하고 공헌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 만들기, 매칭 지원 추진하기

2 지역에서 안심하고 계속해서 생활하기 위하여

재택의료와 개호의 제휴 강화와 서비스를 확충

- 지역 포괄 지원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 재택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충하기
- 의료 요구에 대한 대응과 24시간 대응 가능한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추진하기
- 재택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 기관의 확보와 의료와 개호의 제휴를 강화하기

치매 환자를 위한 시책 추진

- 치매 고령자의 조기진단, 조기 대응을 위한 체제를 정비하기
- 치매 질환 의료 센터를 중심으로 한 치매 의료 체제를 확충하기
- 치매 환자와 개호자가 모두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 만들기과 개호자 지원을 확충하기
- 지역에서 보살피고 서로 돕는 체제를 구축하기
- 청년성 치매 환자 지원하기

생활 지원 서비스의 확충

- 예방 급부(방문 개호, 통소 개호, 데이 서비스)를 지역 지원 사업으로 원활하게 이행하기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하기

3 안정된 생활의 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 상황에 맞는 시설과 주택을 정비하기
- 고령자 시설과 주택에 관한 상담 체제를 확충하고 정보 제공하기

시책 추진을 위한 시점

지역 포괄 케어 실현을 위하여

-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는 지역 만들기
- 개호 인재를 확보하고 자질 향상시키기
- 개호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기
- 시민이 알기 쉽도록 정보를 공표하고 발신하기
- 적정량의 개호 서비스 제공과 품질 확보하기
- 고충 상담 체제를 확충하기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고령자께서 친숙한 지역에서 자신다운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 예방, 주택, 생활 지원이 일체적으로 제공되는 체제입니다.



이 계획에서 지향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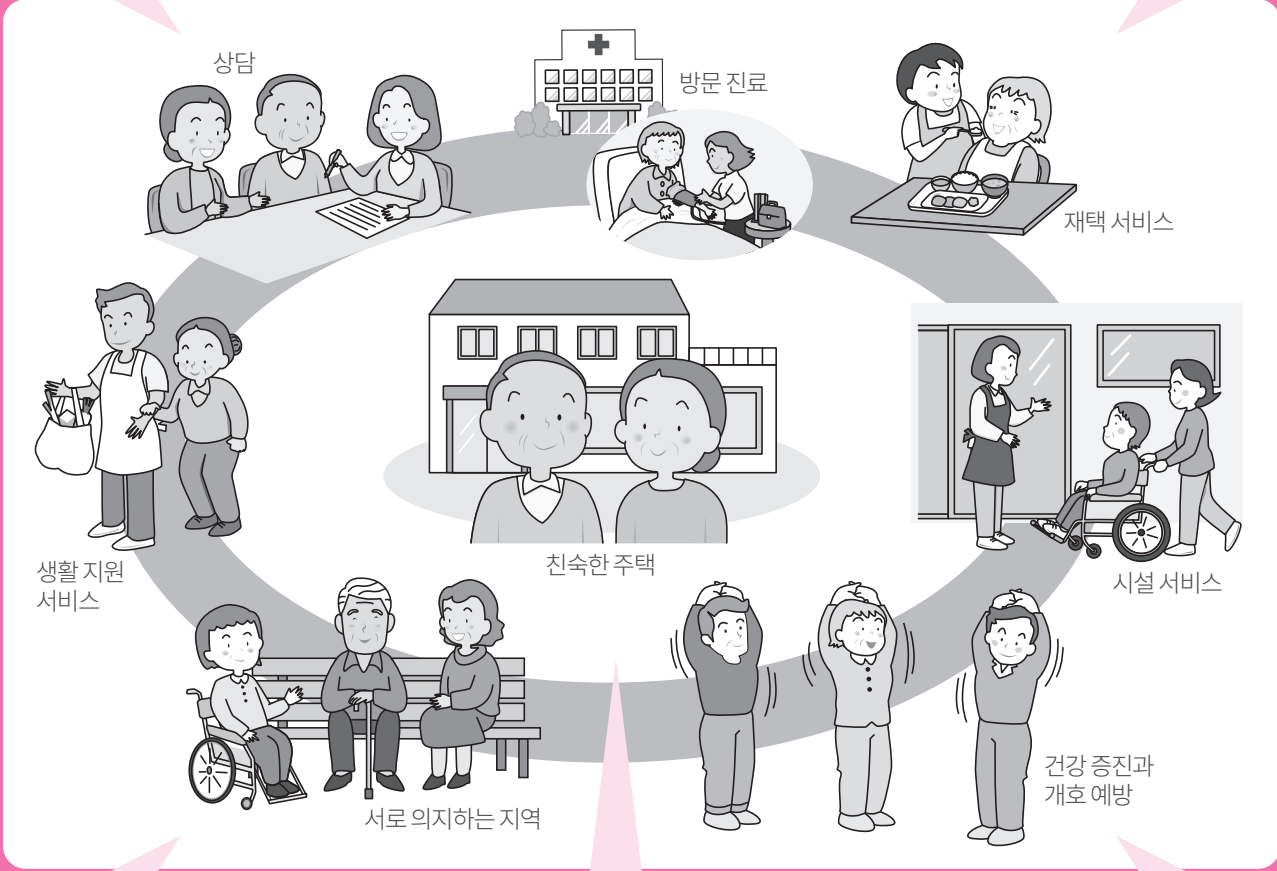
“지역 포괄 케어 계획”으로서 각 계획 기간에 단계적으로 개호 서비스의 내용을 확충하고 고령자를 보살피는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여 2025년도까지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합니다.

【 2025년의 모습 ~1948년 전후에 태어난 세대로 만 75세 이상~ 】
고령자 한분 한분이 어떠한 심신 상태에서도 가능한 한 친숙한 지역에서 존엄을 유지하며 자신다운 일상생활을 평생 영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상담 창구가 있으며 자신에게 딱 맞는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생활 지원,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개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의료를 포함한 갖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24시간, 365일, 안심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 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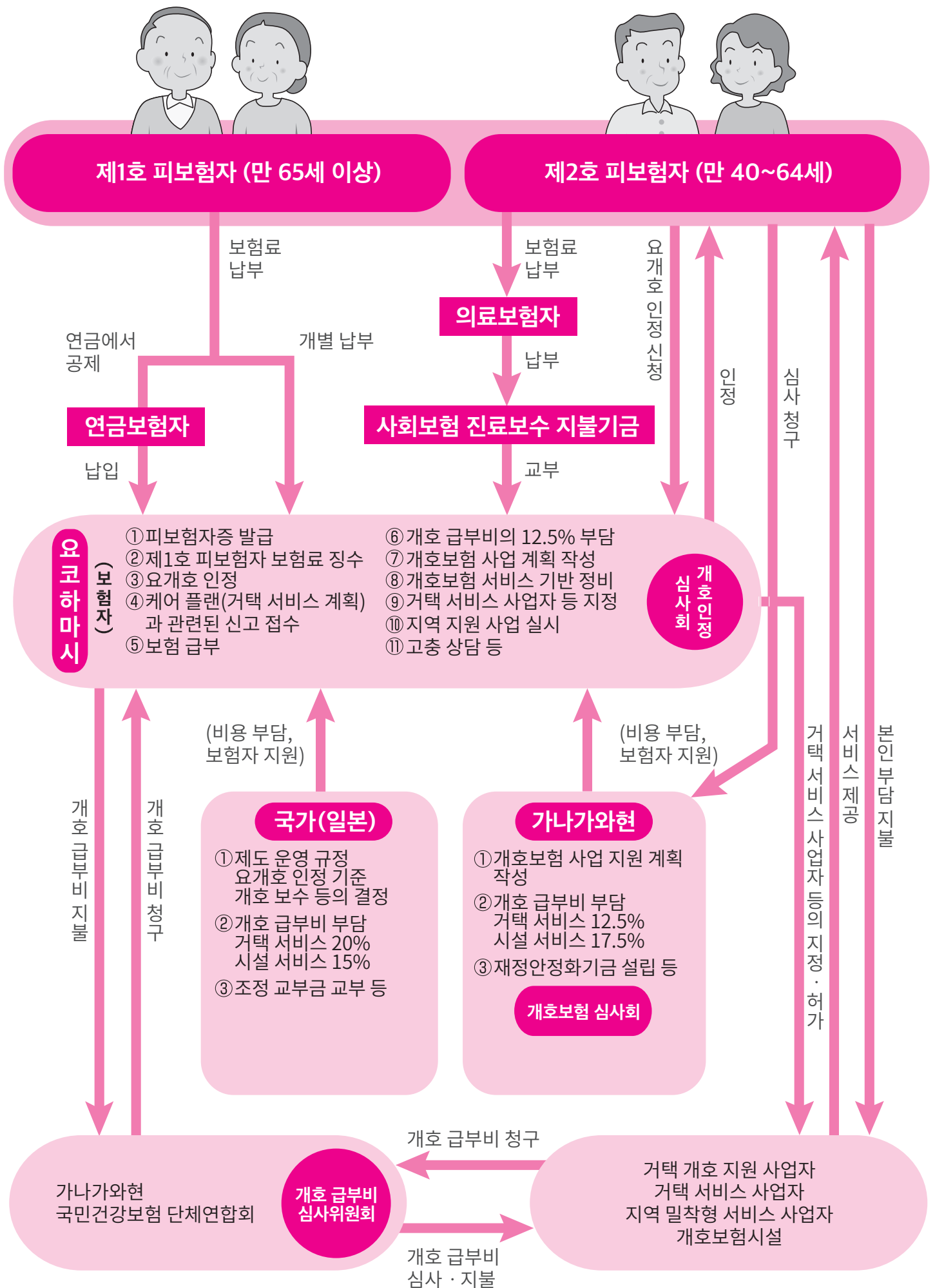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지역에서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보람이 느껴지는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은 스스로 만드는 것. 건강하고 알찬 평생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 증진, 개호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호보험제도의 구조



요코하마 시내에 주소가 있는 만 40세 이상의 주민이 요코하마시 개호보험의 가입 대상입니다 (피보험자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시민 전원 (제1호 피보험자)

만 65세를 맞이한 분(생일 전날)은 전원 제1호 피보험자가 됩니다. 개호가 필요한 경우는 원인을 불문하고 요개호 인정을 거쳐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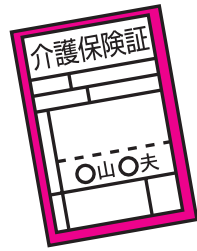
개호보험증 교부

전원에게 교부됩니다. 만 65세를 맞이하는 생일 전에 개호보험 피보험자증(개호보험증)을 보내 드립니다.

신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시초선(市町村)에서 전입했거나 다른 시초선(市町村)으로 전출할 경우
- 주소 및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
- 개호보험증을 분실했거나 오손한 경우
- 피보험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시외의 개호보험 시설 등에 입소(입주)하여 주소가 변동된 경우 *
- 생활 보호 등을 받은 경우(또는 받지 않게 된 경우)



개호보험제도의 구조 / 개호보험대상자

만 40~64세의 의료보험에 가입한 모든 시민 (제2호 피보험자)

만 40~64세의 의료보험에 가입한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제2호 피보험자가 됩니다.

가령(加齢)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16종류를 국가(일본)가 지정**)이 원인으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된 경우에만 요개호 인정을 거쳐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호보험증 교부

요개호 · 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과 교부를 희망하는 분에게 발급됩니다.

제2호 피보험자가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질병**

- | | | | |
|-----------------|----------------------------------|-------------------------------|---|
| ①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 ⑦ 척주관 협착증 | ⑪ 진행성 핵상 마비, 피질 기저핵 변성 및 파킨슨병 | ⑮ 양쪽 무릎 관절 또는 고관절에 현저한 변형을 동반하는 변형성 관절증 |
| ② 후종인대 골화증 | ⑧ 조로증 | ⑫ 폐색성 동맥 경화증 | ⑯ 말기암 |
| ③ 관절을 동반하는 골다공증 | ⑨ 당뇨병성 신경 장애, 당뇨병성 망막증 및 당뇨병성 신증 | ⑬ 류마티스 관절염 | |
| ④ 다계통 위축증 | ⑩ 뇌혈관 질환 | ⑭ 만성 폐색성 폐질환 | |
| ⑤ 초로기 치매 | | | |
| ⑥ 척수 소뇌 변성증 | | | |

개호보험시설 등에 입소(입주)한 분의 특례* (주소지 특례)

요코하마시의 개호보험에 가입한 분(피보험자)이 다른 시초선(市町村)에 소재한 아래의 시설 등에 입소(입주)함에 따라 주소가 변동된 경우에도 지속해서 시설 등이 소재한 지역의 시초선(市町村)이 아닌 요코하마시의 피보험자로 구분됩니다.

<주소지 특례에 해당하는 시설 등>

- 개호보험시설 (특별 양호 노인홈, 개호 노인 보건시설,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 유료 노인홈
- 경비 노인홈
- 양호 노인홈
-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용 주택 가운데 유료 노인홈에 해당하는 시설

개호보험 적용 제외 시설

아래의 시설에 입소(입원)한 분은 입소(입원) 기간 중에는 개호보험의 피보험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고령 · 장애인 지원과 또는 보험연금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해당하는 시설>

- 의료형 장애아 입소시설
- 장애인 지원시설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따른 생활 개호 및 시설 입소 지원의 지급 결정을 받은 분 등)
- 지적의료기관 (국립병원 등. 단, 지체 장애아 시설 지원을 받아 입원하는 분에 한함)
-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따른 요양 개호를 실시하는 병원(요양 개호에 따른 급부를 받고 입원한 분에 한함)
- 희망원 (노조미노소노)
- 한센병 요양소
- 구호시설
- 노동재해 보상법에 규정된 시설
- 신체장애아 요양시설

보험료 안내

만 65세 이상인 분(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 만 65세 이상인 분의 보험료는 시초선(市町村)이 3개년(2015년도~2017년도) 개호보험 서비스 급부액 등의 예상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하며 조례 등으로 규정된 후에 확정합니다.
- 보험료는 전년 중의 소득 등에 따른 단계별 보험료로 구분되어 있으며 개인별로 산정됩니다. 매년 6월에 그 연도(4월~다음 해 3월)의 보험료액을 결정합니다. 보험료액을 결정한 후에 보험료액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료액을 재산정합니다.

기준액 : 연간 71,880엔 (월간 환산 5,990엔) ... 제6단계 보험료액입니다.

2015년도~2017년도 (연간 금액)

| 보험료 단계 | 대상자 | | 보험료액 (기준액×비율=연간보험료액) | |
|------------|---|---|--|-----------------------|
| 제1단계 | · 생활보호 또는 중급 잔류 일본인 등 지원 급부 수급자 · 시민세 비과세 세대인 동시에 노령복지연금 수급자 | | 71,880엔×0.40=28,750엔(※1) 경감전 [71,880엔×0.45=32,340엔] | |
| 제2단계 | 본인이 시민세 비과세 | 본인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3)'과 '합계 소득 금액(※4)'의 합계가 연간 80만엔 이하인 분 | 71,880엔×0.40=28,750엔(※1) 경감전 [71,880엔×0.45=32,340엔] | |
| 제3단계 | | 본인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과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가 연간 120만엔 이하인 분으로 또한 제2단계에 속하지 않는 분 | 71,880엔×0.60= 43,120엔 | |
| 제4단계 | | 상기 이외의 분 | 71,880엔×0.65= 46,720엔 | |
| 제5단계 | | 본인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과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가 연간 80만엔 이하인 분 | 71,880엔×0.90= 64,690엔 | |
| 제6단계 (기준액) | 과세자가 있는 분 | 상기 이외의 분 | 71,880엔×1.00= 71,880엔 | |
| 제7단계 | 본인이 시민세 과세 |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 160만엔 미만인 분 | 71,880엔×1.10= 79,060엔 |
| 제8단계 | | | 160만엔 이상 250만엔 미만인 분 | 71,880엔×1.27= 91,280엔 |
| 제9단계 | | | 250만엔 이상 350만엔 미만인 분 | 71,880엔×1.55=111,410엔 |
| 제10단계 | | | 350만엔 이상 500만엔 미만인 분 | 71,880엔×1.69=121,470엔 |
| 제11단계 | | | 500만엔 이상 700만엔 미만인 분 | 71,880엔×1.96=140,880엔 |
| 제12단계 | | | 700만엔 이상 1,000만엔 미만인 분 | 71,880엔×2.28=163,880엔 |
| 제13단계 | | | 1,000만엔 이상인 분 | 71,880엔×2.60=186,880엔 |

※ 1 소비세에 의한 공비를 투입하여 제1~2단계의 비율·보험료액을 경감합니다.

※ 2 세 대... 원칙적으로 4월 1일 현재 주민표 상의 세대. 단, 4월 2일 이후에 시외에서 전입한 경우 및 연도 도중에 만 65세(제1호 피보험자)가 된 경우, 그 연도는 각각 전입일, 생일 전날의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3 공적연금 등 수입... 세법상 과세 대상의 수입이 되는 공적 연금 등(국민연금, 후생연금 등)의 수입. 비과세가 되는 연금(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4 합계 소득 금액... 전년의 수입 금액 가운데 필요 경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세법상 각종 소득 공제(예: 배우자 공제, 의료비 공제 등), 토지·건물 등 양도 소득 특별 공제, 상장 주식 등 양도 손실과 관련된 이월 공제의 경우는 손실의 이월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 등을 말합니다. 또한, 합계 소득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0엔으로 계산합니다.

| 보험료 납부기한 | 특별 징수 | 연금에서 공제 | 짜수달의 연금 지급일에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
|----------|-------|------------|---|
| | 보통 징수 | 계좌 자동이체 납부 | 매월 29일이 계좌 자동이체일입니다(2월은 말일). 계좌 자동이체일이 금융기관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 영업일이 계좌 자동이체일입니다. |
| | | 납부서 납부 | 매월 말일이 납부기한입니다. 납부기한이 금융기관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영업일이 납부기한입니다. |

계좌 자동이체로 납부

- 보통 징수로 보험료를 납부하실 때는 계좌 자동이체가 편리합니다.
- 신청은 계좌 자동이체 의뢰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시고 통장 신고인을 날인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해 주십시오(의뢰서는 금융기관 또는 구청 보험연금과에 있습니다).
- 계좌 자동이체는 금융기관에서 신청하신 후 약 2개월 뒤에 개시됩니다. 개시시기는 수속이 종료된 후에 엽서로 알려 드립니다.
-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셔도 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특별 징수 대상에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방법은 **특별 징수** 와 **보통 징수** 의 2가지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법령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보험자가 선택할 수 없으므로 이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 징수

연금이 연간 18만엔 이상인 분은 연금에서 보험료 금액이 공제됩니다.

- 연금 지급 달에 연 6회로 나눠 보험료 금액이 공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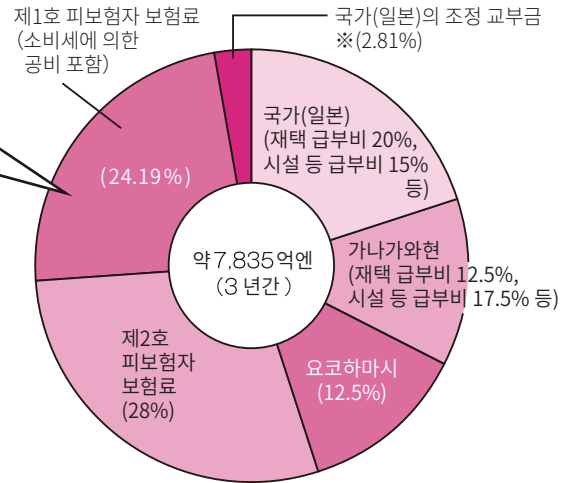
공제 대상이 되는 연금

- 노령(퇴직)연금 ● 유족연금 ● 장애연금
- ※노령복지연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징수

연금이 연간 18만엔 미만 등으로 특별 징수 대상이 아닌 분은 계좌 자동이체 또는 납부서로 개별적으로 납부합니다.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서비스의 재원
(2015년도 ~2017년도 예상)



보험료 안내

※ 국가(일본)의 조정 교부금

개호를 받을 가능성이 큰 만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을수록, 또한 제1호 피보험자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기준액이 높아집니다. 조정 교부금은 이와 같은 시초선(市町村)의 노력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국가(일본)에서 시초선(市町村)으로 교부됩니다.

Point

개호보험료는 무엇에 사용되나요?

개호보험료는 개호가 필요한 분의 개호보험 서비스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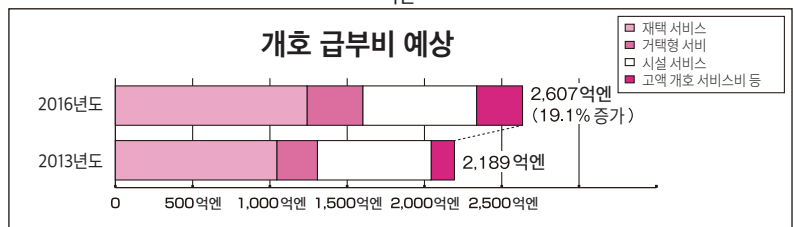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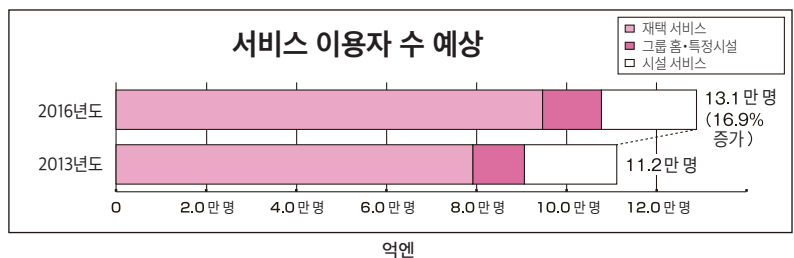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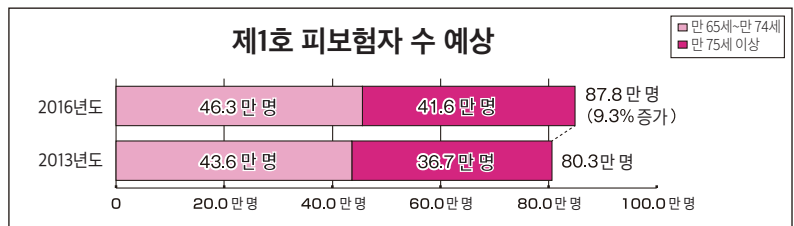
2015년도~2017년도 개호보험료 재조정 안내

고령자 가운데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개호보험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3년 동안에도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어 보험료를 부담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그 이상으로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자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개호 서비스 비용에 대한 1호 피보험자 부담 비율이 1% 오르는 것도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가 됩니다.

한편 제1·2단계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개호보험 재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공비와 따로 소비세에 의한 공비를 투입한 보험료 경감 조치가 실시됩니다.

고령자께서 안심하고 계속해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개호 서비스의 기반 정비가 필요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확보하면서 건강 수명 일본 제일을 목표로 건강 증진, 개호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험료 안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료 감면

재해, 실업, 도산 및 그 밖의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는 개호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보험연금과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사정의 종류 | 대상자 | 감면 내용 |
|--------|---|--|
| 재해 | 풍수해, 화재, 지진 등으로 가옥 등의 자산이 20% 이상 피해를 받은 분. | 피해의 정도에 따라 4개월분 또는 6개월분을 면제합니다. |
| 소득 감소 | 실업 또는 사업 실패 등으로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분. | 해당 연도 중의 예상 소득 금액 등을 바탕으로 감액합니다. |
| 저소득 | 특히 소득이 낮은 보험료 단계 제7단계 이하이며 일정 '수입 기준' 및 '자산 기준' 모두를 만족하는 분(생활보호 또는 중국 잔류 일본인 등 지원 급부를 받고 있는 분은 제외). | 제1단계 (공비에 의한 경감 조치 전)의 1/2의 상당액으로 감액합니다. |
| 자택 이주 | 이주로 지금까지 거주하신 자택을 매각하고 그 소득을 새 거주지 구매에 충당한 분. | 합계 소득 금액에서 구매 비용(양도 소득을 상한)을 공제한 소득에 따라 보험료 단계를 판정합니다. |

저소득자 감면 수입 기준 · 자산 기준

| | | |
|-------|--|--|
| 수입 기준 | 세대 전원의 연간 수입 예상액이 | |
| | 단신자 세대 | 150만엔 이하 |
| | 2명 이상의 세대 | 150만엔에 해당 피보험자를 제외한 세대 구성원 1명당 50만엔을 더한 금액 이하 |
| 자산 기준 |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
| | (가) 세대 전원의 현금, 예저금, 유가증권 등 자산의 합계가 | |
| | 단신자 세대 | 350만엔 이하 |
| | 2명 이상의 세대 | 350만엔에 해당 피보험자를 제외한 세대 구성원 1명당 100만엔을 더한 금액 이하 |
| | (나) 주거용 토지(200㎡ 이하) 및 가옥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 |

Point

보험료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십시오

보험료는 개호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입니다.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십시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독촉장을 송부합니다.

또한, 납부가 독촉장의 지정기한을 지나면 지정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납부서로 납부하는 분에게는 편리한 계좌 자동이체를 권장합니다.

만 40~64세인 분(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

[결정방법] 각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등)의 보험자가 가입하는 제2호 피보험자의 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납부방법] 의료보험의 보험료로서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보험료] 가입한 의료보험에 따라 다르며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의료보험의 보험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 소득할과 균등할이 있습니다.
- 개호보험료는 제2호 피보험자의 소득과 가입 인원수에 따라 계산되며 의료보험과 함께 세대주가 부담합니다.
- 6월부터 다음 해 3월에 걸쳐 10회로 나눠 납부합니다(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각 달 말일).
- 납부서는 원칙적으로 6월, 7월, 10월, 1월 연 4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직장 건강보험

-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급료에 따라 다릅니다.
 - 보험료의 일부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의 배우자 등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 ※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건강보험 보험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료는 개호보험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가 지체되면 개호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데 큰 지장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보험료(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료를 납부한 분과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단행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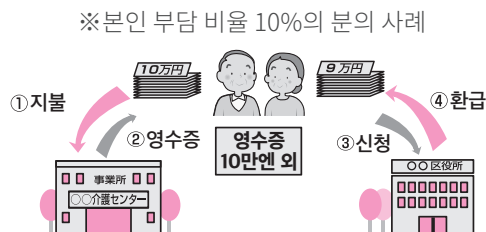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간 납부하지 않으면 . . .

보험 급부 지급방법이 변경됩니다(상환 지불화)

-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일단 비용 전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 일단 지불한 비용은 구청에 신청하면 보험 급부 분이 추후 환급됩니다.

1달에 10만 엔의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이 상환 지불화가 된 경우

- ① 상환 지불이므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100%인 10만엔을 지불합니다.
- ② 10만엔의 영수증, 서비스 제공 증명서 등을 발급받습니다.
- ③ 10만엔의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구청에 보험 급부分的 환급 신청을 합니다.
- ④ 추후 보험 급부 分을 환급받습니다.



보험료 안내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 . .

보험 급부가 일시 정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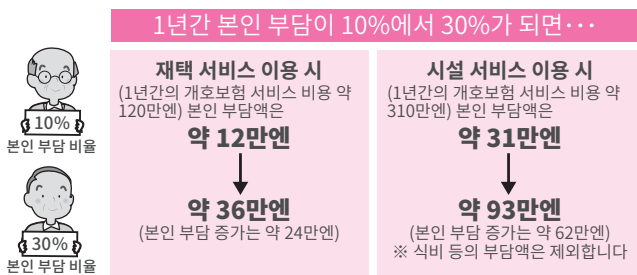
- 상환 지불된 급부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환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등의 조치가 단행됩니다.
- 또한, 체납이 계속되는 경우는 정지된 보험 급부에서 체납 보험료가 차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 . .

보험 급부액이 감액됩니다(이용자 부담 비율 인상)

- 보험료는 독촉장이 도착한 날의 다음 날 등(시효 기산일)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납부할 수 없게 됩니다.
- 시효로 납부할 수 없게 된 보험료가 있으면 그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보험 급부의 본인 부담 비율이 30%로 인상됩니다.
- 또한, 이 기간은 고액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 환급(31페이지) 및 방세·식비 부담 경감(32페이지)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의 본인 부담액은 고액 의료 고액 개호 합산제도(33페이지)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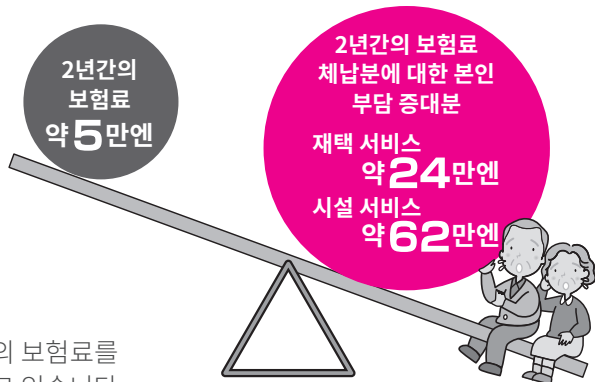
요개호 2의 분의 평균적인 1년간 서비스 이용 시의 본인 부담 사례 (※)



이처럼 개호보험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본인 부담이 증대합니다.

이 사례는 4년간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시효로 2년분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된 후에 개호보험 서비스를 받을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본인 부담이 30%가 되는 기간은 1년간입니다. 보험료 납부 완료 기간이 일부 있는 경우는 그 기간에 따라 급부액 감액 기간이 단축됩니다.



※보험료 제2단계로 본인 부담 비율 10%의 분의 사례

재산 압류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른 체납 처분으로 예저금, 생명보험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대 납부 의무자

납부방법이 보통징수인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 및 배우자는 해당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제2호 피보험자가 의료보험을 미납한 경우

제2호 피보험자(만 40~64세의 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지급방법 변경과 아울러 보험 급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등의 조치가 단행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까지의 흐름

1 요개호 인정을 받습니다



케어 플랜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재조정합니다. 또한, 지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인정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합니다.

심신의 상태에 변화가 발생하여 개호의 필요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인정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케어 플랜을 작성하고 사업자와 계약합니다

케어 매니저 등과 상담하여 요개호도별 이용 한도액(10페이지) 범위에서 본인의 희망 및 상태에 따른 거택 서비스 계획(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 직접 케어 플랜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구청 고령·장애 지원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케어 플랜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원칙적으로 비용의 10%*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단, 2015년 8월 이후는 일정 이상 소득(본인 합계 소득 금액이 160만원 이상 등)이 있는 경우 20% 부담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9페이지 참조)

1 요개호 인정을 받습니다

1. 신청을 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구청 고령·장애 지원과 및 지역 포괄 지원센터(지역 케어플라자 등)에서 '요개호 인정' 신청을 합니다.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 등이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등

- 요개호·요지원 인정 신청서(창구에 있습니다.)
 - 개호보험증(만 65세가 된 시점에서 교부됩니다.)
 - 인감(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다니고 있는 의료기관명, 의사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제2호 피보험자(4페이지)인 경우는 가입한 의료보험의 보험증

2. 심신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 인정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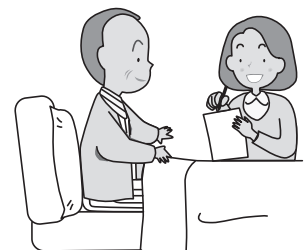
조사원이 자택 등을 방문하여 본인과 가족에게 청취 조사를 합니다.

조사 항목은 전국 공통인 74항목의 기본조사와 개항 조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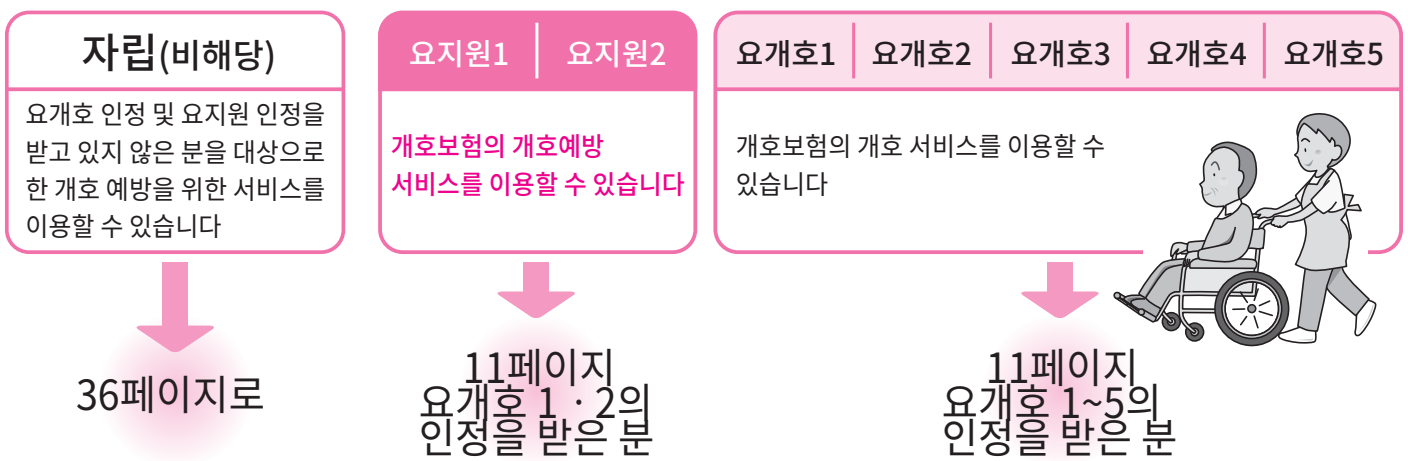
● 주치의 의견서

신청 시에 지정한 주치의가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주치의가 없는 경우는 창구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호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개호보험의 거택 서비스에는 이용 한도액이 있습니다

개호보험의 거택 서비스에는 요개호도에 따른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등은 이용 한도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거택 영양 관리지도’는 이용 한도액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 요개호도 | | 이용 가능한 단위 수 | 1개월당 이용 한도액 ※ |
|------|------|-------------|---------------|
| 요지원 | 요지원1 | 5,003 단위 | 약 5 ~ 6 만엔 |
| | 요지원2 | 10,473 단위 | 약 10 ~ 12 만엔 |
| 요개호 | 요개호1 | 16,692 단위 | 약 17 ~ 19 만엔 |
| | 요개호2 | 19,616 단위 | 약 20 ~ 22 만엔 |
| | 요개호3 | 26,931 단위 | 약 27 ~ 30 만엔 |
| | 요개호4 | 30,806 단위 | 약 31 ~ 34 만엔 |
| | 요개호5 | 36,065 단위 | 약 36 ~ 40 만엔 |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실제 비용은 ‘단위 수×요코하마시의 지역 구분 단가(10엔~11.12엔)’에 따라 산정됩니다.
(15페이지 참조)

3. 어느 정도 개호가 필요한지 심사하고 인정합니다

●심사·판정·인정

인정 심사 결과와 주치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개호인정 심사회가 얼마나 개호가 필요한지 등을 심사·판정합니다.

구에서는 개호인정 심사회의 심사·판정에 따라 요개호도를 인정합니다.

- (1차 판정) 컴퓨터 판정
- (2차 판정) 개호인정 심사회에서 심사·판정
- 요개호도 인정



4. 인정 결과 통지서와 개호보험증이 도착합니다

통지서와 보험증이 도착하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사항

요개호 상태 구분
(‘요지원1·2’, ‘요개호1~5’, ‘비해당’)

인정 유효기간 등
(신규신청·구분 변경 신청인 경우는 3~12월, 갱신 신청인 경우는 3~24월)



2 케어 플랜을 작성하고 사업자와 계약합니다

요지원 1·2의 인정을 받은 분

1. 거주하시는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 포괄 지원센터(지역 케어플라자 등)에서 개호 예방 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지역 포괄 지원센터의 보건사 등이 이용자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생활 기능의 유지·향상을 목표로 한 개호 예방 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개호 예방 케어 플랜 작성은 이용자의 의향에 따라 지정 거택 개호 지원사업소의 케어 매니저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역 포괄 지원센터의 보건사 등이 작성한 개호 예방 케어 플랜을 확인합니다.)

지역 포괄 지원센터에 대하여 13페이지

요개호 1~5의 인정을 받은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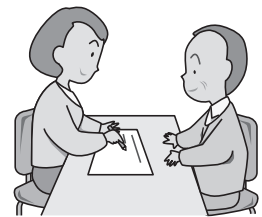
● 재택 생활의 지속을 희망하는 경우

1. 케어 매니저를 결정합니다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 또는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사업소에 소속하는 케어 매니저가 케어 플랜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정할 때는 구청 고령·장애 지원과의 창구 및 지역 포괄 지원센터(지역 케어 플라자 등)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에 대하여 13페이지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에 대하여 24페이지

2. 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케어 매니저와 상담합니다.
 케어 매니저가 작성한 케어 플랜을 확인합니다.



●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1. 이용하는 시설을

희망하는 시설에서 서비스 내용 및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습니다.
 (시설에 관한 정보 제공은 구청 및 지역 포괄 지원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소를 신청합니다

※특별 양호 노인홈은 입소 신청 접수센터에서 상담·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요개호도에 따라서 입소 요건이 다릅니다(26페이지). 그 밖의 시설은 각 시설에 직접 신청합니다(27페이지).

※특별 양호 노인홈은 원칙적으로 요개호3 이상인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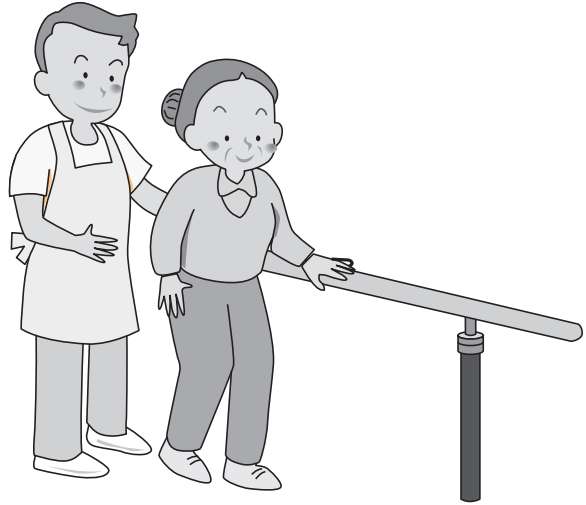
3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2. 서비스 사업자와 계약합니다

계약서, 중요사항 설명서 등에서 서비스 내용 등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마다 개별적으로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자와의 계약에 대하여 14페이지

개호 예방 서비스는 16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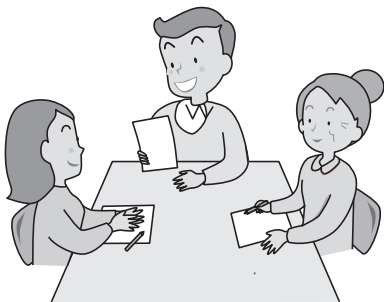


재택(거택) 서비스는 16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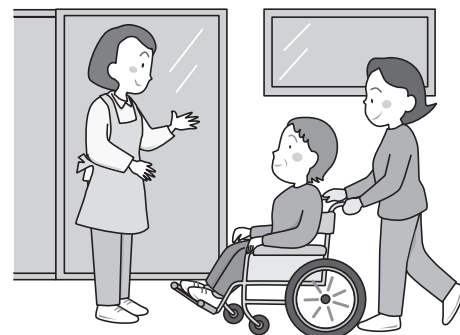
3. 서비스 사업자와 계약합니다

계약서, 중요사항 설명서 등에서 서비스 내용 등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마다 개별적으로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자와의 계약에 대하여 14페이지

시설 서비스는 26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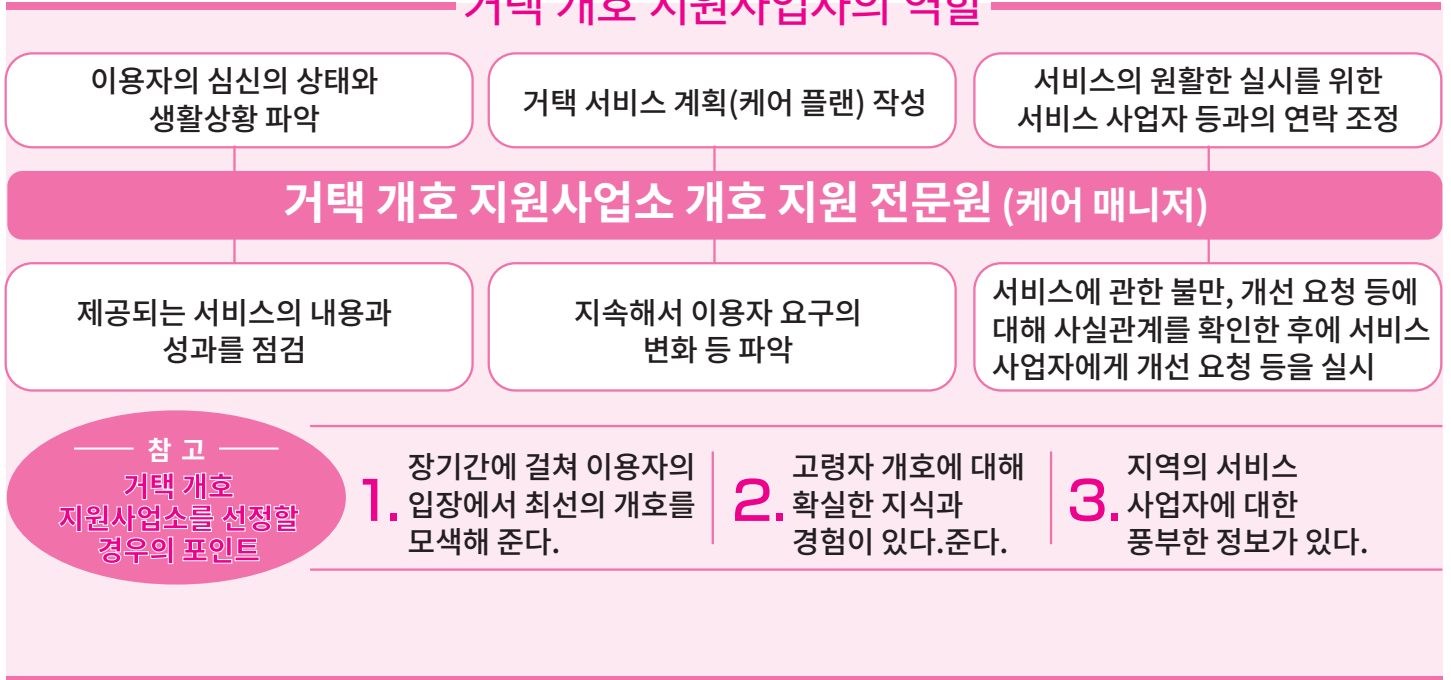


거택 개호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케어 플랜을 작성하는 담당 케어 매니저를 결정합니다.

- 이용자와 가족의 심신 상태나 의향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거택 서비스 계획(케어 플랜)을 작성하거나 각 서비스 사업자와의 이용 조정을 합니다.
- 비용은 전액 개호보험에서 지불되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거택 개호 지원사업자의 역할



지역 포괄 지원센터 안내

지역 포괄 지원센터는 지역 밀착형 상담 창구입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고령자께서 친숙한 지역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케어 플라자와 일부 특별 양호 노인홈에 지역 포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역 포괄 지원센터의 역할



- 일상생활 속에서의 고충이나 걱정은 무엇이든 거주하시는 지구를 담당하는 지역 포괄 지원센터에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연말연시 기간 및 시설 점검일(월 1회)을 제외한 토요일·일요일·공휴일도 개관하고 있습니다.
- 요지원 1·2의 인정을 받은 분에게는 인정 결과와 함께 담당 지역 포괄 지원센터 목록을 보내드립니다. 거주하시는 지구를 담당하는 지역 포괄 지원센터는 거주하시는 구의 구청 고령·장애 지원과에서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자와의 계약에 대하여

이용자는 이용하는 각 서비스별로 사업자와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 및 그에 따른 중요사항 설명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교환하고 기재사항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되는 경우는 구청의 창구 등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Point

계약서 및 중요사항 설명서의 확인 포인트

● 서비스 내용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확실히 기재되어 있는가?
 →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계약서와는 별도로 설명서 등에 기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계약 기간

계약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의 계약 갱신에 대해서 확실히 기재되어 있는가?

● 서비스 내용 설명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제공 기록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거나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이용자 부담금

이용자 부담금이 확실히 기재되어 있는가?
 → 법령으로 인정된 부담금 이외에 협력금, 사용료 등의 모호한 비용이 부과되어 있지 않은가?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지 않은가?

● 이용자 부담금 체납

이용자 부담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마련하는 등의 배려를 하고 있는가?
 → 즉시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가?

● 이용자 해지권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위약금이 필요하지 않은가?

● 서비스 이용 취소

예정된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
 → 고액의 취소료가 필요하지 않은가?

● 손해배상

이용자의 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

● 비밀 유지

문서를 통한 동의가 없으면 이용자 및 가족에 관한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고충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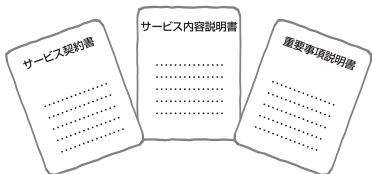
사업자는 고충에 대응하는 창구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대응을 규정하고 있는가?

계약서에 불합리한 명목 비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호보험의 이용자 부담 범위는 28페이지로

● 서비스 계약서 ●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유효기간·지불·해지 등)이 기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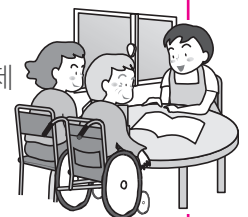


● 서비스 내용 설명서의 내용 ●

- ①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 ② 제공 횟수와 일정
- ③ 이용자 부담과 지불방법
- ④ 서비스를 취소할 경우의 연락방법과 취소료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 중요사항 설명서의 내용 ●

- ① 사업자 개요
- ② 사업소 개요
- ③ 사업소의 직원체제
- ④ 영업시간
- ⑤ 이용자 부담
- ⑥ 상담 창구 등이 기재됩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개호보험 서비스의 종류

개호보험 서비스는 요개호 인정을 받은 분과 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릅니다. 요개호자는 개호 서비스, 요지원자는 개호 예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개호 급부를 실시하는 서비스 | 예방 급부를 실시하는 서비스 |
|-------------------|---|---|
| | 거택 개호 지원 | 개호 예방 지원 |
| 거택 서비스 | 방문 개호(홈 헬프) 방문 입욕 개호 방문 간호 방문 재활치료 거택 영양 관리지도 통소 개호(데이 서비스) 통소 재활치료(데이 케어) 단기 입소 생활 개호(쇼트 스테이) 단기 입소 영양 개호(쇼트 스테이)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단기 이용) 복지용구 대여 특정 복지용구 구매 | 개호 예방 방문 개호(홈 헬프) 개호 예방 방문 입욕 개호 개호 예방 방문 간호 개호 예방 방문 재활치료 개호 예방 거택 영양 관리지도 개호 예방 통소 개호(데이 서비스) 개호 예방 통소 재활치료(데이 케어)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쇼트 스테이)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영양 개호(쇼트 스테이) 개호 예방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개호 예방 복지용구 대여 특정 개호 예방 복지용구 구매 |
| 지역 밀착형 서비스 | 정기 순회 · 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그룹 홈)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그룹 홈) (단기 이용) 지역 밀착형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지역 밀착형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단기 이용)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단기 이용)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구명칭 : 복합형 서비스) | 개호 예방 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 개호 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개호 예방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그룹 홈) 개호 예방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그룹 홈) (단기 이용) |
| 서비스 시설 | 개호 노인 복지시설(특별 양호 노인홈) 개호 노인 보건시설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 ※상기 외 주택 개수 · 개호 예방 주택 개수 22페이지 지역 지원 사업(시초선(市町村)이 실시)은 36~38페이지 |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16~27페이지의 개호보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대략적인 본인 부담액 기준을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대략적인 본인 부담액 기준에는 10% 부담인 분을 사례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사업소의 체제 등에 따른 가산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Point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의 계산방법은?

각 서비스 단위 수에 요코하마시의 지역 구분 단가(오른쪽 표)를 곱하고 그 10%를 본인 부담액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표시가 있는 서비스의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은 30일간 이용한 경우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단위 수 × 요코하마시의 지역 구분단가 × 0.1 = 본인 부담액

| 서비스 종류(예방, 지역 밀착 포함) | 지역 구분 단가 |
|--|----------|
| 거택 영양 관리지도 복지용구 대여 | 10 엔 |
| 통소 개호, 단기 입소 영양 개호 ※개호 노인 복지시설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개호 노인 보건시설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지역 밀착형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 10.72 엔 |
| 방문 재활치료, 통소 재활치료, 단기 입소 생활 개호 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 10.88 엔 |
| 방문 개호, 방문 입욕 개호, 방문 간호, 정기 순회 · 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거택 개호 지원 | 11.12 엔 |

자택에서 이용하는 거택 서비스

요개호 1~5의 분

방문 개호(홈 헬프)

홈 헬퍼(방문 개호원)가 이용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식사 및 배설 보조, 옷 갈아입기 및 침상 목욕 등의 신체 개호 및 청소, 세탁 등의 생활 지원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 | | | | | |
|---------------------|--------|------------------|------------------|------------------|-------------|
| 신체 개호 중심으로 이용 | 20분 미만 | 20분 이상 30분 미만 | 30분 이상 60분 미만 | 60분 이상 90분 미만 | 이후 30분마다 |
| | 184엔 | 273엔 | 432엔 | 628엔 | 89엔 |

| | | | |
|---------------------------|------------------|------------------|--------|
| 신체 개호에 이어 생활 지원을 이용 | 20분 이상 45분 미만 | 45분 이상 70분 미만 | 70분 이상 |
| | 75엔 | 149엔 | 224엔 |

| | | |
|---------------------|------------------|------------------|
| 생활 지원 중심으로 이용 | 20분 이상 45분 미만 | 45분 이상 70분 미만 |
| | 204엔 | 251엔 |

◇예를 들어 신체 개호를 중심으로 '30분 이상 60분 미만' 이용한 후에 연이어 생활 지원을 '20분 이상 45분 미만' 이용한 경우의 본인 부담은 507엔 (432엔+75엔=507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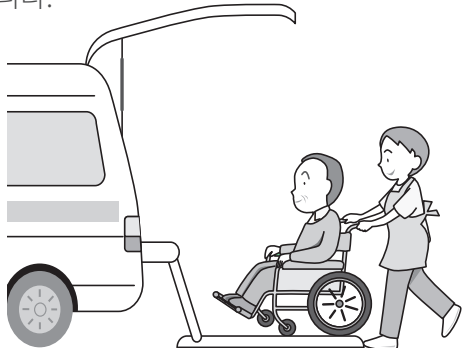
※'생활 지원 중심으로 이용'을 45분 이상 또는 '신체 개호에 이어 생활 지원을 이용'을 70분 이상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액은 정액이 됩니다.

- 생활 지원은 이용자가 직접 가사를 하기 어렵고 가족 및 지역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일상생활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개호 급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 ① '직접 본인의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예를 들어 가족분의 세탁, 조리·쇼핑, 방 청소, 손님 접대, 자가용 세차 등
② '일상생활의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예를 들어 마당 잡초 뽑기, 애완동물 돌보기, 대청소, 창문 유리 닦기, 가옥 수리, 페인트칠, 원예, 설날 등의 명절을 위해서 특별한 수고를 들여 만드는 음식 등
- 이른 아침 및 심야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대에 따라 본인 부담이 1.25~1.5배가 됩니다.

요개호 1~5의 분

통원 등 승하차 보조

통원 시 승하차 보조와 운전을 홈 헬퍼 1명이 실시합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편도 108엔

◇운임은 별도 본인 부담입니다.

요지원 1·2의 분

개호 예방 방문 개호

이용자가 가능한 한 자택에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입욕 및 배설, 식사 보조 등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상태 유지 및 개선을 도모해 요개호 상태가 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사업소는 원칙적으로 1곳에 한합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 이용 횟수(1개월) | 요지원1 | 요지원2 |
|----------------|--------|--------|
| 주 1회 정도 | 1,299엔 | 1,299엔 |
| 주 2회 정도 | 2,597엔 | 2,597엔 |
| 주 2회를 초과하는 경우※ | | 4,119엔 |

※요지원 1의 분은 주 2회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지원 1·2의 분은 '통원 등 승하차 보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요지원1·2분에 대한 방문 개호와 통소 개호가 변경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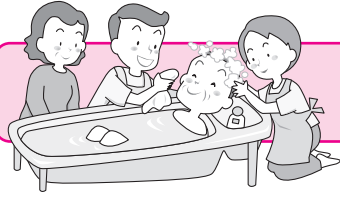
요코하마시에서는 2016년 1월부터 요지원1·2분에 대한 방문 개호·통소 개호를 국가(일본)가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예방 급부에서 시초선(市町村)이 실시하는 지역 지원 사업으로 이행합니다.

이행 당초는 기존의 개호 사업소에 의한 현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7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서비스와 아울러 NPO, 자원봉사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요개호 1~5의 분

방문 입욕 개호



간호 직원 및 개호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거실 안으로 욕조를 옮겨 3명(요지원은 2명)이 1팀이 되어 입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 회 당 1,373 엔

◇전신 입욕이 곤란하여 침상 목욕 및 부분 목욕을 이용할 경우는 1회당 961엔입니다.

요지원 1·2의 분

개호 예방 방문 입욕 개호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 회 당 928 엔

◇전신 입욕이 곤란하여 침상 목욕 및 부분 목욕을 이용할 경우는 1회당 650엔입니다.

요개호 1~5의 분

방문 재활치료

병 상태가 호전되어 집에서 요양할 수 있으나 통원이 어려운 분에게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이학 요법사 및 작업 요법사 등이 자택을 방문하여 재활치료 등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 회 당 329 엔

◇이용 시 재활치료 실시 계획이 작성되어 집중적으로 재활치료가 실시된 경우는 1회당 218엔이 가산됩니다.

요지원 1·2의 분

개호 예방 방문 재활치료

통원이 곤란한 분에게 전문가가 이용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개호 예방을 목적으로 한 재활치료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 회 당 329 엔

◇이용 시 재활치료 실시 계획이 작성되어 집중적으로 재활치료가 실시된 경우는 1회당 218엔이 가산됩니다.

요개호 1~5의 분

거택 요양 관리지도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분 가운데 통원이 어려운 경우에 의사 및 치과의사, 약사 등이 방문하여 요양과 관련한 지도 및 조언과 케어 매니저에게 케어 플랜 책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요지원 1·2의 분

개호 예방 거택 요양 관리지도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분 가운데 통원이 어려운 경우에 의사 및 치과의사, 약사 등이 방문하여 생활 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도 및 조언과 지역 포괄 지원센터 등에 케어 플랜 책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부담 기준 대략적인 본인 | 이용 횟수 | 의사·치과의사 | 의료기관의 약사 | 약국의 약사 | 관리 영양사 | 치과 위생사 등 | 보건사·간호사 |
|------------------|-------------------------|---------|----------|--------|--------|----------|---------|
| | 1 회당 | 503엔 | 553엔 | 503엔 | 533엔 | 352엔 | 402엔 |
| | 동일 건물 거주자에게 같은 날 방문한 경우 | 452엔 | 387엔 | 352엔 | 452엔 | 302엔 | 362엔 |
| 이용 한도 횟수 | 월 2회 | 월 2회 | 월 4회 ※1 | 월 2회 | 월 4회 | ※2 | |

※ 1 암 말기인 분 또는 중심 정맥 영양을 공급받고 있는 분은 주 2회 월 8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 거택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후 6개월 동안에 2회가 한도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10% 부담인 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요개호 1~5의 분

방문 간호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등이 자택에서 영양하고 있는 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 체크 및 영양과 관련한 간호·조언 등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회 제공시간 | 20분 미만 ※1 | 30분 미만 | 30분 이상 60분 미만 | 60분 이상 90분 미만 | 90분 이상 ※2 |
|------------|-----------|--------|---------------|---------------|-----------|
| 서비스 구분 | | | | | |
| 방문 간호 스테이션 | 345엔 | 515엔 | 906엔 | 1,243엔 | 1,576엔 |
| 병원 또는 진료소 | 292엔 | 436엔 | 631엔 | 929엔 | 1,263엔 |

※1 '20분 미만'은 별도로 주 1회 이상 20분 이상의 방문 간호를 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조조 및 심야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대에 따라 본인 부담이 1.25~1.5배가 됩니다.
 ※2 특별 관리 가산 대상인 분으로, 방문 간호의 소요 시간을 통산한 시간이 90분 이상이 되는 경우 산정합니다.

요지원 1·2의 분

개호 예방 방문 간호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등이 자택에서 영양하고 있는 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생활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 건강 체크 및 영양과 관련한 간호·조언 등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요개호 1~5의 분

통소 개호(데이 서비스)

데이 서비스 사업소 등에 다니면서 식사 및 입욕, 건강 체크, 기능 훈련 등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 1일당 | 요개호 1 | 요개호 2 | 요개호 3 | 요개호 4 | 요개호 5 |
|---------------|-------|-------|-------|--------|--------|
| 7시간 이상 9시간 미만 | 704엔 | 831엔 | 963엔 | 1,095엔 | 1,227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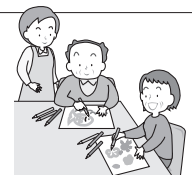
- ◇ 일반적인 규모의 통소 개호 사업소를 7시간 이상 9시간 미만 이용한 경우의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송영 서비스 비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입욕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1일당 54엔이 가산됩니다.
- ◇ 이 밖에 영양 개선 서비스 및 구강 기능 향상 서비스 등을 이용한 경우에 가산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요지원 1·2의 분

개호 예방 통소 개호

생활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해서 데이 서비스 사업소 등에 다니면서 입욕, 식사 등의 개호 및 그 밖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공통 서비스와 더불어 아래의 선택적인 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합니다. 이용료는 1개월 단위의 정액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소는 원칙적으로 1곳에 한합니다.

- 선택적 서비스 종류 —
- 생활 기능 향상 그룹 활동
 - 운동기관 기능 향상
 - 영양 개선
 - 구강 기능 향상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 1개월당 | 공통 서비스 | 생활기능 향상 그룹 활동 가산 | 운동기관 기능 향상 가산 | 영양 개선 가산 | 구강 기능 향상 가산 |
|-------|--------|------------------|---------------|----------|-------------|
| 요지원 1 | 1,766엔 | 108엔 | 242엔 | 161엔 | 161엔 |
| 요지원 2 | 3,621엔 | 108엔 | 242엔 | 161엔 | 161엔 |



◇ '송영 서비스' 및 '입욕 서비스' 비용은 공통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영양 통소 개호(데이 서비스)

난치병 및 암 말기로 상시 간호사에 의한 관찰이 필요하며 상태가 중증도인 분을 대상으로 식사 및 입욕, 건강 체크, 기능 훈련 등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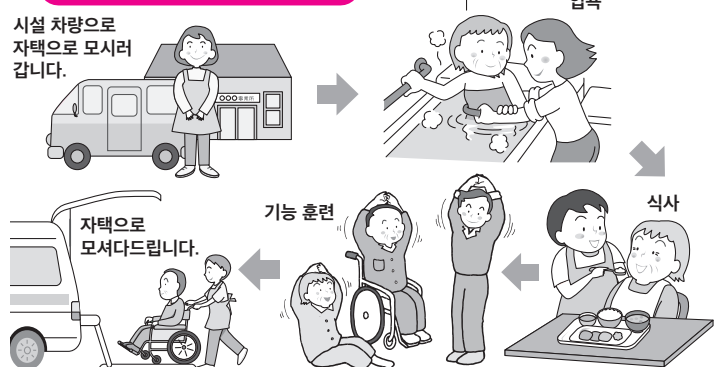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 1일당 | (구분 없음) |
|---------------|---------|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1,620엔 |



◇ 신체 상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분이 한정됩니다.

데이 서비스의 하루(사례)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10% 부담인 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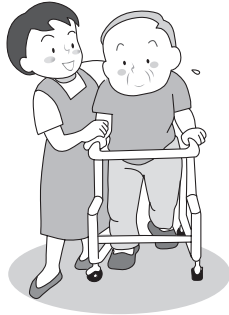
이용 가능한 서비스

이용 가능한 서비스

요개호 1~5의 분

통소 재활치료(데이 케어)

심신의 기능 유지·회복을 위해서 주치의가 필요를 인정한 경우에 개호 노인 보건시설, 병원·진료소에 다니면서 재활치료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 1일당 | 요개호 1 | 요개호 2 | 요개호 3 | 요개호 4 | 요개호 5 |
|------------------|-------|-------|--------|--------|--------|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790엔 | 952엔 | 1,112엔 | 1,277엔 | 1,438엔 |



◇ 개호 노인 보건시설 및 병원·진료소 등 일반적인 규모의 통소 개호 사업소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이용한 경우의 대략적인 기준입니다(송영 서비스 비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욕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1일당 55엔이 가산됩니다.

◇ 이 밖에 재활치료 실시 계획에 따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실시한 경우 및 영양 개선 서비스 및 구강 기능 향상 서비스 등을 이용한 경우에 가산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요지원 1·2의 분

개호 예방 통소 재활치료

심신의 기능 유지·회복을 위해서 주치의가 필요를 인정한 경우에 개호 노인 보건시설, 병원·진료소 등에 다니면서 재활치료와 입욕, 식사 등의 개호 및 그 밖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공동 서비스)를 받습니다. 또한, 아래의 선택적인 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합니다.

이용료는 1개월 단위의 정액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소는 원칙적으로 1곳에 한합니다.

<선택적 서비스의 종류> ·운동기관 기능 향상
·영양 개선 ·구강 기능 향상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 1개월당 | 공동 서비스 | 운동기관 기능 향상 가산 | 영양 개선 가산 | 구강 기능 향상 가산 |
|-------|--------|---------------|----------|-------------|
| 요지원 1 | 1,972엔 | 245엔 | 164엔 | 164엔 |
| 요지원 2 | 4,042엔 | 245엔 | 164엔 | 164엔 |



◇ '송영 서비스' 및 '입욕 서비스' 비용은 공동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거택형 서비스

요개호 1~5의 분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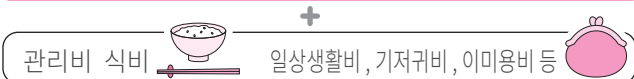
개호보험의 지정을 받은 개호 제공 유료 노인홈 등에 입주하여 식사·입욕·배설 등과 관련된 개호 및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개월당

| 요개호 1 | 요개호 2 | 요개호 3 | 요개호 4 | 요개호 5 |
|---------|---------|---------|---------|---------|
| 16,854엔 | 18,876엔 | 21,059엔 | 23,083엔 | 25,233엔 |



요지원 1·2의 분

개호 예방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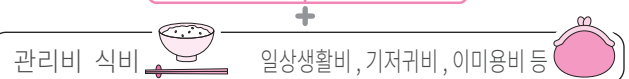
개호보험의 지정을 받은 개호 제공 유료 노인홈 등에 입주하여 직원에게서 일상생활상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생활 기능 향상을 고려한 서비스를 받습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개월당

| 요지원 1 | 요지원 2 |
|--------|--------|
| 5,660엔 | 4,739엔 |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10% 부담인 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시설에 단기간 입소하는 거택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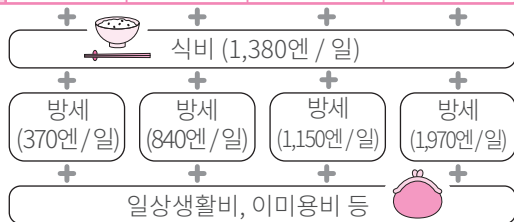
요개호 1~5의 분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복지시설에서의 쇼트 스테이)

가정에서 개호하기가 일시적으로 곤란해진 경우 등에 복지시설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식사 및 옷 갈아입기, 입욕 등 일상생활 개호 및 레크리에이션 등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체류하는 방(룸)의 종류에 따라 이용요금이 다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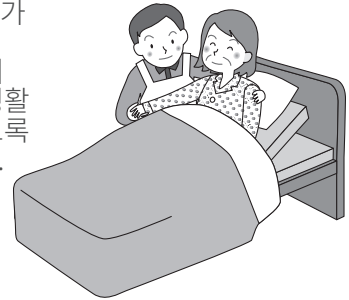
| 1일당 | 다인실(정원 2명 이상) | | 종래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하지 않은 개인실 | 유닛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한 약 4평 이상의 개인실 |
|-------|---------------|-----------|----------------------------|---------------------------------|
| | ~2015/7/31 | 2015/8/1~ | | |
| 요개호 1 | 703엔 | 652엔 | 630엔 | 737엔 |
| 요개호 2 | 776엔 | 725엔 | 703엔 | 809엔 |
| 요개호 3 | 850엔 | 799엔 | 777엔 | 886엔 |
| 요개호 4 | 923엔 | 872엔 | 850엔 | 958엔 |
| 요개호 5 | 994엔 | 943엔 | 921엔 | 1,030엔 |



요지원 1·2의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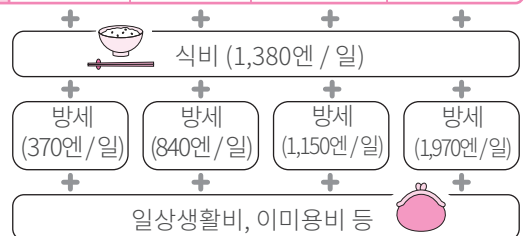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가정에서 개호하기가 일시적으로 곤란해진 경우 등에 복지시설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생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 1일당 | 다인실(정원 2명 이상) | | 종래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하지 않은 개인실 | 유닛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한 약 4평 이상의 개인실 |
|-------|---------------|-----------|----------------------------|---------------------------------|
| | ~2015/7/31 | 2015/8/1~ | | |
| 요개호 1 | 515엔 | 477엔 | 472엔 | 553엔 |
| 요개호 2 | 633엔 | 587엔 | 586엔 | 687엔 |



이용 가능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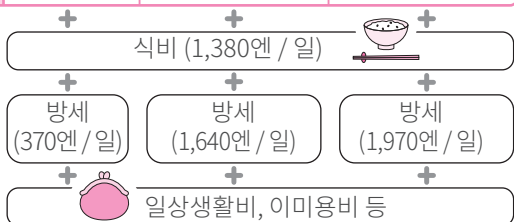
요개호 1~5의 분

단기 입소 영양 개호 (개호 노인 보건시설·병원 등에서 쇼트 스테이)

가정에서 개호하기가 일시적으로 곤란해진 경우 등에 개호 노인 보건시설 및 의료시설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의사 및 간호사, 이학 요법사 등에게서 의학적 관리 아래 기능 훈련 및 생활 지원 등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체류하는 방(룸)의 종류에 따라 이용요금이 다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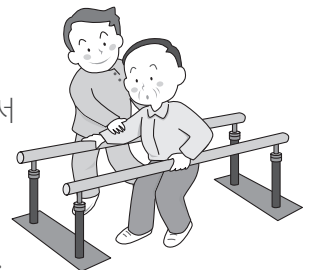
| 1일당 | 다인실 (정원 2명 이상) | 종래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하지 않은 개인실 | 유닛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한 약 4평 이상의 개인실 |
|-------|-------------------|----------------------------|---------------------------------|
| | | | |
| 요개호 2 | 934엔 | 853엔 | 937엔 |
| 요개호 3 | 1,000엔 | 918엔 | 1,004엔 |
| 요개호 4 | 1,054엔 | 974엔 | 1,061엔 |
| 요개호 5 | 1,111엔 | 1,028엔 | 1,115엔 |



요지원 1·2의 분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영양 개호

가정에서 개호하기가 일시적으로 곤란해진 경우 등에 개호 노인 보건시설 및 의료시설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의사 및 간호사, 이학 요법사 등에게서 의학적 관리 아래 개호 예방을 목적으로 한 일상생활상의 지원 및 기능 훈련 등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 1일당 | 다인실 (정원 2명 이상) | 종래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하지 않은 개인실 | 유닛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한 약 4평 이상의 개인실 |
|-------|-------------------|----------------------------|---------------------------------|
| | | | |
| 요지원 2 | 817엔 | 768엔 | 831엔 |



◇ 송영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편도198~201엔이 가산됩니다.

◇ 기저귀비는 개호보험에 포함됩니다.

※ 식비·방세는 국가(일본)가 제시하는 표준적인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요금은 각 시설에 문의해 주십시오.

※ 수입이 적은 분을 대상으로 한 식비 및 방세가 경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32페이지).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10% 부담인 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생활 환경을 정비하는 서비스

요개호 1~5의 분

요지원 1·2의 분

복지용구 대여

일상생활의 자립을 돕기 위한 복지용구를 대여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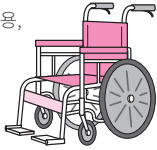
개호 예방 복지용구 대여

개호 예방으로 이어지는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대여해 드립니다.

대여 대상(13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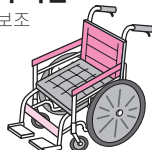
1 휠체어

*자주용, 보조용, 보통형 전동 휠체어



2 휠체어 부속품

*쿠션, 전동 보조 장치 등



3 특수 침대

*등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침대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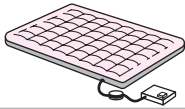
4 특수 침대 부속품

이동용 바, 매트리스, 사이드 레일, 테이블, 보조용 벨트, 슬라이딩 보드·매트



5 욕창 방지 용구

*에어 매트, 워터 매트 등



6 자세 변환기

*기상 보조 장치 등 포함



7 치매 노인 배회 감지기

*침상 이탈 감지 센서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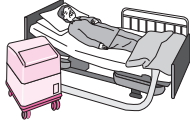
8 이동용 리프트

*계단 이동용 리프트 등 포함



9 자동 배설 처리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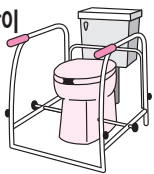
*교환 가능 부품 제외



※ 1~8 은 일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요지원 1·2, 요개호 1의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9 자동 배설 처리 장치 가운데 대변을 흡입하는 기능이 있는 장치는 일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요지원 1·2, 요개호 1~3의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소변을 흡입하는 장치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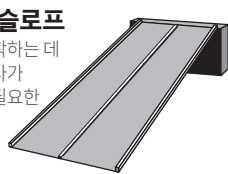
10 안전 손잡이

*장착하는 데 공사가 불필요한 것



11 슬로프

*장착하는 데 공사가 불필요한 것



12 보행기



13 보행 보조 지팡이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대여 금액의 10% (또는 20%)

※대여 금액은 용구의 종류·품목, 업자에 따라 다릅니다.

요개호 1~5의 분

요지원 1·2의 분

특정 복지용구 구매

대여가 활성화되지 않은 배설 및 입욕 등에 사용하는 복지용구 구매시 지불한 금액의 90% (또는 80%)를 환급합니다.

특정 개호 예방 복지용구 구매

개호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배설 및 입욕 등에 사용하는 복지용구 구매시 지불한 금액의 90% (또는 80%)를 환급합니다.

구매 대상 (5종류)

■ 지정 사업자를 통해 구매한 제품이 아닌 경우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 좌변기

*좌변기의 바닥 높임 재료 등을 포함



자동 배설 처리 장치의 교환 가능 부품

*리시버, 튜브, 탱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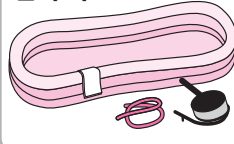


입욕 보조 용구

*입욕용 의자, 욕조 내 의자, 입욕대·입욕용 보조 벨트 등



간이 욕조



이동용 리프트에 매다는 용구



구매 금액의 10% (또는 20%)

(환급 한도액 연간 9만엔(또는 8만엔)) ※구매 금액이 10만엔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한 금액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① 신청서 (구청 보험연금과에서 배포)

② 영수증

③ 복지용구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에 기재, 이유서, 거택 서비스 계획, 복지용구 판매계획 중 한 가지)

④ 해당 복지용구의 팸플릿 등 (복지용구의 개요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

※ 원칙적으로 같은 종류의 복지용구는 중복해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요개호 1~5의 분

요지원 1·2의 분

주택 개수

개호 예방 주택 개수

재택 요개호자가 자택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택 개수를 한 경우에 지불한 금액의 90% (또는 80%) 를 환급합니다.



대상이 되는 공사

- ① 안전 손잡이 설치
- ② 단차 또는 경사 해소
- ③ 미끄럼 방지 및 원활한 이동 등을 위한 바닥, 통로면 재료 변경
- ④ 미닫이문 등으로 교체(문 철거, 문 신설[교체보다 비용이 저렴한 경우] 포함)
- ⑤ 좌식 변기를 양변기 등으로 변기 교체
- ⑥ 상기 ①~⑤의 공사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 안전 손잡이 설치를 위한 벽의 골조 보강
 - 욕실, 화장실 공사에 따른 급배수 설비 공사
 - 슬로프 설치에 의한 전락, 탈륜 방지를 위한 울타리 등 설치
 - 문 교체에 따른 벽 또는 기둥 개수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수령 위임 지불이 아닌 경우)

[공사 전]

- ① 신청서(구청 보험연금과에서 배포)
- ② 견적서 및 견적금액 내역서
- ③ 주택 개수가 필요한 이유서(케어 매니저가 작성. 담당 케어 매니저가 없는 경우는 구청 고령·장애 지원과와 상담해 주십시오.)
- ④ 공사 시공 전의 사진
- ⑤ 주택 개수 후의 완성 예정도
- ⑥ 주택 개수에 관한 승낙서 및 임대 계약서 사본(임대 주택인 경우)

[공사 완성 후]

- ① 영수증 및 공사 내역서
- ② 개수 후의 사진

요코하마시의 주택 개수에 대하여

주택 개수는 이용자가 청구받은 비용의 전액을 일단 본인이 부담하고 추후에 90% (또는 8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요코하마시에는 10% (또는 20%) 분의 본인 부담만을 사업자에게 지불 하면 개수할 수 있는 수령 위임 지불제도가 있습니다.

본 제도는 시에 등록된 주택 개수 사업자가 실시하는 개수가 대상입니다. 등록 사업자 명부는 구청 고령·장애 지원과 및 보험연금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코하마시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city.yokohama.lg.jp/kenko/kourei/riyousya/shinsei/juukai/meibo.html>

◇개호보험의 주택 개수와는 별도로 주거 환경 정비사업(39페이지)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공사, 지원 금액 등이 다르지만,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 환경 정비사업도 반드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구청 고령·장애 지원과와 상담해 주십시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개수 비용의 10% (또는 20%) (환급 한도액 18만엔 (또는 16만엔))

※ 개수 비용의 한도액은 현 주택당 20만엔 입니다.

이사한 경우 또는 요개호도가 3단계 또는 4단계 이상 위중해진 경우는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한도액은 같습니다).

- 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구청 보험연금과에 신청합니다. 보험연금과에서 발급되는 '주택 개수에 관한 안내서'를 받은 후에 공사를 개시합니다.
- ② 공사 완료 후 일단 비용의 전액을 사업자에게 지불한 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보험 연금과에 제출하고 보험 급부금(비용의 90% (또는 80%))을 환급받습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이용 가능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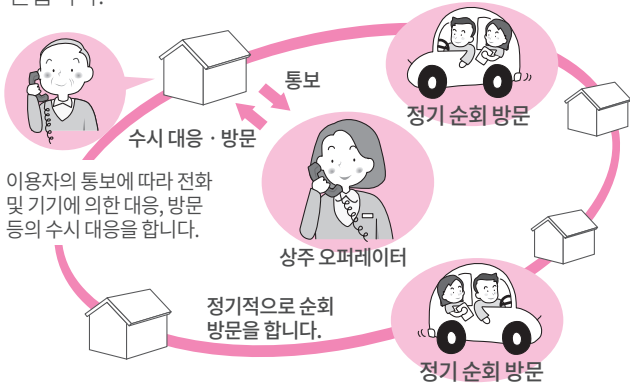
지역 밀착형 서비스

지역 밀착형 서비스는 가능한 한 친숙한 자택 및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요코하마시에 소재한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소는 원칙적으로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피보험자, 요코하마시에 소재한 주소지 특례 대상 시설※에 2015년 4월 이후 입주한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노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용 주택 등)

요개호 1~5의 분 (요지원 1·2의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기 순회 · 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주야간을 통틀어 방문 개호와 방문 간호가 일체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연계하면서 정기 순회형 방문과 수시 대응 · 방문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사업소는 원칙적으로 1곳에 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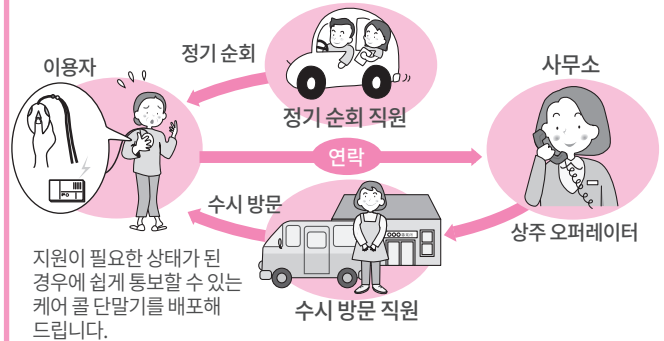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개월당

| | 개호 · 간호 이용 | 개호 이용 |
|-------|------------|---------|
| 요개호 1 | 9,180엔 | 6,292엔 |
| 요개호 2 | 14,342엔 | 11,232엔 |
| 요개호 3 | 21,891엔 | 18,648엔 |
| 요개호 4 | 26,986엔 | 23,588엔 |
| 요개호 5 | 32,692엔 | 28,528엔 |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야간의 정기적인 순회에 의한 방문 개호 서비스와 더불어 수시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용자 자택을 방문합니다. 또 이용자의 통보에 따라 조정 · 대응하는 오퍼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야간 방문 서비스 (I)

| 오퍼레이션 서비스 | 정기 순회 서비스 | 수시 방문 서비스(I) |
|------------|-----------|--------------|
| 1개월 1,091엔 | 1회 410엔 | 1회 623엔 |

야간 방문 서비스 (II)

| 수시 방문 · 정기 순회 서비스 |
|-------------------|
| 1개월 2,966엔 |

요개호 1~5의 분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치매 고령자께서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5~9명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의 개호를 받습니다. 방, 거실, 식당, 욕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용자가 각각 역할을 맡아 가사 등을 하면서 치매 증상의 진행을 완화하고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유닛 수에 따라 부담액이 다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개월당

| | 1유닛 | 2유닛 이상 |
|-------|---------|---------|
| 요개호 1 | 24,410엔 | 24,024엔 |
| 요개호 2 | 25,568엔 | 25,150엔 |
| 요개호 3 | 26,307엔 | 25,921엔 |
| 요개호 4 | 26,854엔 | 26,436엔 |
| 요개호 5 | 27,401엔 | 26,950엔 |



| | | |
|----|------------------|---------------------|
| 식비 | 방세,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 | 일상생활비, 기저귀비, 이미용비 등 |
|----|------------------|---------------------|

요지원 2의 분

개호 예방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치매 고령자께서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직원이 일상생활상의 지원과 함께 생활 가능 향상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요지원 1의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유닛 수에 따라 부담액이 다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1개월당

| 요지원 2 | 1유닛 | 2유닛 이상 |
|-------|---------|---------|
| | 24,281엔 | 23,895엔 |



| | | |
|----|------------------|---------------------|
| 식비 | 방세,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 | 일상생활비, 기저귀비, 이미용비 등 |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10% 부담인 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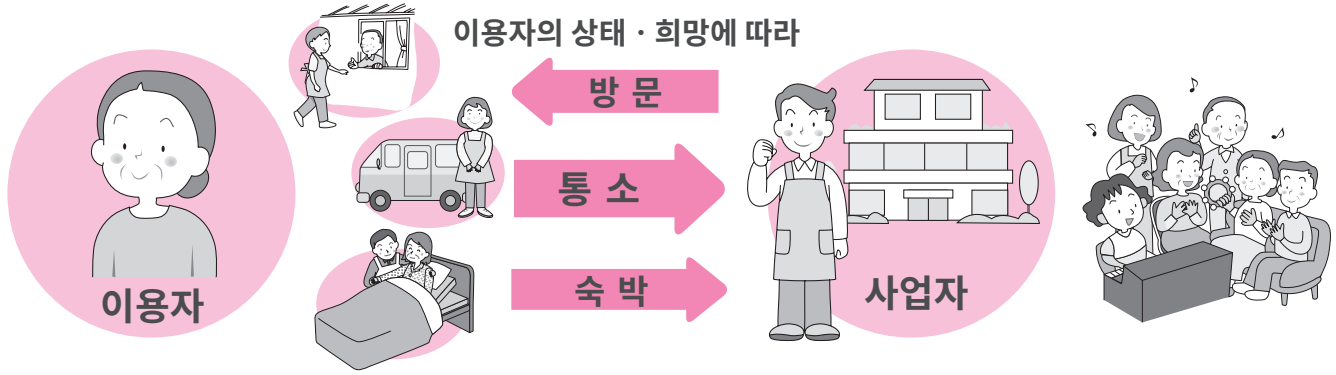
요개호 1~5의 분

요지원 1·2의 분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개호 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이용자가 친숙한 지역에서 사업소에 다니면서 받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직원이 이용자 자택을 방문하거나 이용자가 사업소에 숙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방문 및 숙박 서비스는 이용자가 다니던 사업소의 친숙한 직원에 의해 제공됩니다. 이용료는 1개월 단위의 정액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소는 1곳에 한합니다. 또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동안은 방문 개호(홈 헬프) 및 통소 개호(데이 서비스), 단기 입소 생활 개호·요양 개호(쇼트 스테이) 등 일부 재택 서비스와 다른 지역 밀착형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1개월당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 | |
|-------|----------|
| 요개호 1 | 11,229 엔 |
| 요개호 2 | 16,502 엔 |
| 요개호 3 | 24,004 엔 |
| 요개호 4 | 26,493 엔 |
| 요개호 5 | 29,212 엔 |

+ 식비, 숙박비, 일상생활비 등

1개월당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 | |
|-------|---------|
| 요지원 1 | 3,703 엔 |
| 요지원 2 | 7,483 엔 |

+ 식비, 숙박비, 일상생활비 등

이용 가능한 서비스

요개호 1~5의 분

요지원 1·2의 분

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

개호 예방 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

치매 고령자분을 대상으로 지역 케어 플라자 등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입욕 및 식사 보조, 재활치료 및 레크리에이션 등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치매 고령자분을 대상으로 지역 케어 플라자 등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입욕 및 식사 보조, 재활치료 및 레크리에이션 등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1일당 7시간 이상 9시간 미만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 | |
|-------|---------|
| 요개호 1 | 1,072 엔 |
| 요개호 2 | 1,188 엔 |
| 요개호 3 | 1,305 엔 |
| 요개호 4 | 1,422 엔 |
| 요개호 5 | 1,539 엔 |

+ 식비, 일상생활비, 기저귀비 등

1일당 7시간 이상 9시간 미만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 | |
|-------|---------|
| 요지원 1 | 927 엔 |
| 요지원 2 | 1,036 엔 |

+ 식비, 일상생활비, 기저귀비 등

- ◇ 단독형 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 사업소를 7시간 이상 9시간 미만 이용한 경우의 대략적인 기준입니다(송영 서비스 비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입욕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1일당 55엔이 가산됩니다.
- ◇ 이 밖에 영양 개선 서비스 및 구강 기능 향상 서비스 등을 이용한 경우에 가산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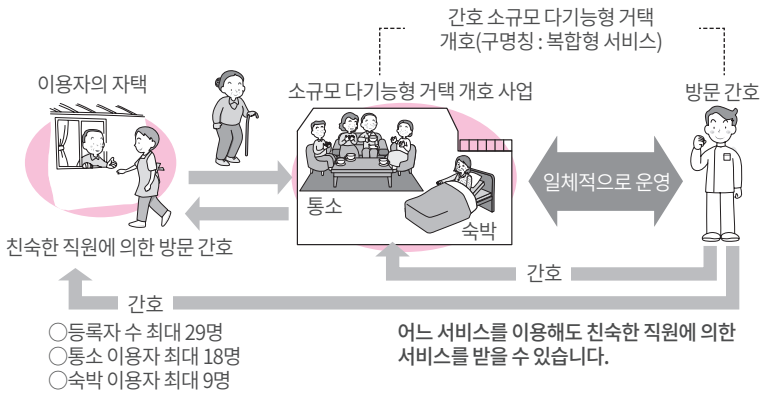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10% 부담인 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요개호 1~5의 분(요지원 1·2의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구명칭: 복합형 서비스)

사업소 '통소'를 통해 받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자의 상황 및 희망에 따라 '방문', '숙박' 서비스를 유연하게 선택하여 제공하는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와 방문 간호를 접목한 서비스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사업소는 원칙적으로 1곳에 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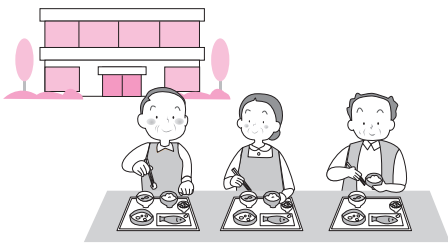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 | |
|-------|---------|
| 1개월당 | |
| 요개호 1 | 13,427엔 |
| 요개호 2 | 18,788엔 |
| 요개호 3 | 26,411엔 |
| 요개호 4 | 29,954엔 |
| 요개호 5 | 33,882엔 |

지역 밀착형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정원 29명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되는 개호 제공 유료 노인홈 등(개호 전용형 특정시설)입니다. 소수 인원의 입주자에게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와 똑같은 서비스(19페이지)가 제공됩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 | | |
|------|-------|---------|
| 1개월당 | 요개호 1 | 17,142엔 |
| | 요개호 2 | 19,200엔 |
| | 요개호 3 | 21,419엔 |
| | 요개호 4 | 23,477엔 |
| | 요개호 5 | 25,664엔 |

관리비

식비

일상생활비, 기저귀비, 이미용비 등

원칙적으로 요개호 3~5의 분(요지원 1·2의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개호 1·2의 분은 특례 입소 제도가 있습니다.(다음 페이지 참조)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정원 29명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되는 특별 양호 노인홈입니다. 소수 인원의 입주자에게 특별 양호 노인홈과 똑같은 서비스(26페이지)가 제공됩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 1개월당 | 다인실(정원 2명 이상) | | 종래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하지 않은 개인실 | 유닛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한 약 4명 이상의 개인실 |
|-------|---------------|-----------|-------------------------------|------------------------------------|
| | ~2015/7/31 | 2015/8/1~ | | |
| 요개호 1 | 19,103엔 | 17,592엔 | 17,592엔 | 20,100엔 |
| 요개호 2 | 21,258엔 | 19,747엔 | 19,747엔 | 22,223엔 |
| 요개호 3 | 23,445엔 | 21,934엔 | 21,934엔 | 24,506엔 |
| 요개호 4 | 25,600엔 | 24,088엔 | 24,088엔 | 26,629엔 |
| 요개호 5 | 27,690엔 | 26,179엔 | 26,179엔 | 28,751엔 |

방세 11,100엔 / 월

방세 25,200엔 / 월

방세 34,500엔 / 월

방세 59,100엔 / 월

식비 (41,400엔 / 월)

일상생활비, 이미용비 등



- ◇이 밖에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용자가 선택하는 서비스에 따라 비용이 추가됩니다.
- ◇기저귀비는 개호보험에 포함됩니다.
- ※ 식비·방세는 국가(일본)가 제시하는 표준적인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요금은 각 시설에 문의해 주십시오.
- ※수입이 적은 분을 대상으로 한 식비 및 방세가 감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32페이지).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10% 부담인 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시설 서비스

시설 서비스는 얼마나 개호가 필요한지에 따라 3종류의 시설로 분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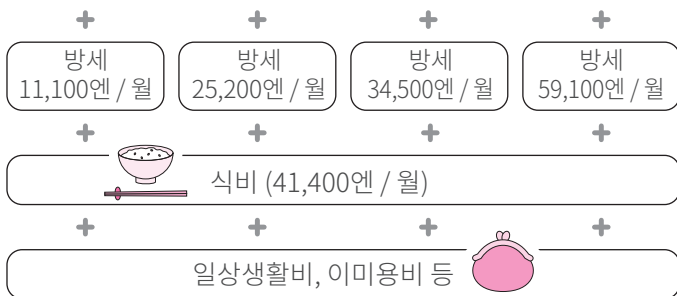
원칙적으로 요개호 3~5의 분(요지원 1·2의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개호 1·2의 분은 특례 입소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참조)

개호 노인 복지시설(특별 양호 노인홈)

입욕, 배설, 식사 개호 등, 일상생활상의 지원, 기능 훈련, 건강 관리 및 영양상의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 1개월당 | 다인실(정원 2명 이상) | | 종래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하지 않은 개인실 | 유닛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한 약 4평 이상의 개인실 |
|-------|---------------|-----------|-------------------------------|------------------------------------|
| | ~2015/7/31 | 2015/8/1~ | | |
| 요개호 1 | 19,103엔 | 17,592엔 | 17,592엔 | 20,100엔 |
| 요개호 2 | 21,258엔 | 19,747엔 | 19,747엔 | 22,223엔 |
| 요개호 3 | 23,445엔 | 21,934엔 | 21,934엔 | 24,506엔 |
| 요개호 4 | 25,600엔 | 24,088엔 | 24,088엔 | 26,629엔 |
| 요개호 5 | 27,690엔 | 26,179엔 | 26,179엔 | 28,751엔 |



◇ 이 밖에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용자가 선택하는 서비스에 따라 비용이 추가됩니다.

◇ 기저귀비는 개호보험에 포함됩니다.

※ 식비·방세는 국가(일본)가 제시하는 표준적인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요금은 각 시설에 문의해 주십시오.

※ 수입이 적은 분을 대상으로 한 식비 및 방세가 경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32페이지).

이용 가능한 서비스

특례 입소 제도 안내

2015년 4월부터 특별 양호 노인홈은 원칙적으로 요개호 3이상인 분을 대상으로 한 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요개호 1·2의 분도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례로서 입소가 인정됩니다.

- 가 치매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증상, 행동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자주 있으므로 집에서 일상생활을 보내기 어렵다.
- 나 지적 장애·정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증상, 행동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자주 있으므로 집에서 일상생활을 보내기 어렵다.
- 다 가족 등에 의한 심각한 학대 등이 의심되므로 심신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 라 단신자 세대이다, 동거 가족이 고령 또는 병약하다 등의 이유로 가족 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지역에서 개호 서비스나 생활 지원의 공급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일상생활을 보내기 어렵다.

요개호 1·2의 분 가운데 입소를 희망하는 분은 입소 신청서에 기재되는 특례 입소 요건의 해당란에 체크를 하시고 신청하십시오.

개호 노인 복지시설(특별 양호 노인홈) 입소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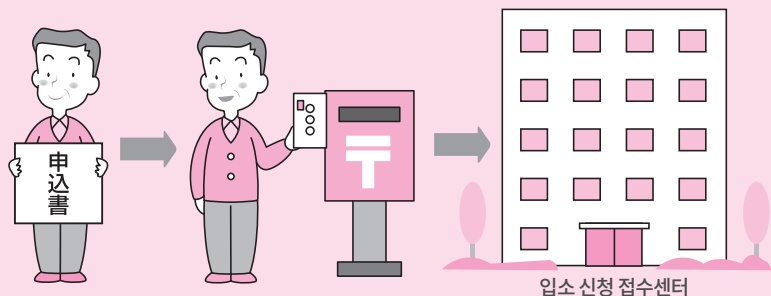
신청은 '입소 신청 접수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합니다.
 구청 고령·장애 지원과, 지역 케어 플라자, 각 특별 양호 노인홈, 건강복지국 고령시설과 등에서 배포하고 있는 신청서에 기입한 후 아래로 보내 주십시오.

< 신청하시는 곳 >

우 233-0002
 고난구 가미오오카 니시 1-6-1
 유메오오카 오피스 타워 10층

특별 양호 노인홈 입소 신청 접수센터

전화 : 045-840-5817 FAX : 045-840-5816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10% 부담인 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요개호 1~5의 분(요지원 1·2의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호 노인 보건시설

이용자가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동작의 재활치료 등을 실시하면서 재택 생활 복귀를 목표로 한 시설입니다. 재택 생활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퇴소하여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병의 상태에 따라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는 적절한 의료기관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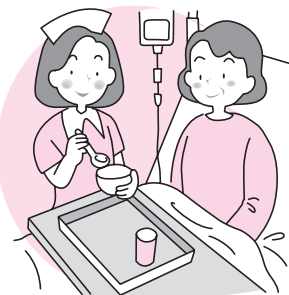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 1개월당 | 다인실 (정원 2명 이상) | 종래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하지 않은 개인실 | 유닛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한 약 4평 이상의 개인실 |
|-------|-------------------|-------------------------------|------------------------------------|
| 요개호 1 | 24,699엔 | 22,352엔 | 24,892엔 |
| 요개호 2 | 26,243엔 | 23,799엔 | 26,339엔 |
| 요개호 3 | 28,205엔 | 25,761엔 | 28,333엔 |
| 요개호 4 | 29,845엔 | 27,433엔 | 30,038엔 |
| 요개호 5 | 31,549엔 | 29,073엔 | 31,678엔 |

| | | |
|-------------------|-------------------|-------------------|
| 방세 11,100엔 / 월 | 방세 49,200엔 / 월 | 방세 59,100엔 / 월 |
| 식비 (41,400엔 / 월) | | |
| 일상생활비, 이미용비 등 | | |

개호 영양형 의료시설

요양 병상과 노인성 치매 질환 요양 병동의 2 종류가 있습니다. 요양 병상은 병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전문적인 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분을 위한 장기 요양 시설입니다. 노인성 치매 질환 요양 병동에서는 치매 고령자에게 영양상의 관리, 간호, 기능 훈련 및 그 밖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

| 1개월당 | 다인실 (정원 2명 이상) | 종래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하지 않은 개인실 | 유닛형 개인실 거실을 병설한 약 4평 이상의 개인실 |
|-------|-------------------|-------------------------------|------------------------------------|
| 요개호 1 | 23,960엔 | 20,615엔 | 24,667엔 |
| 요개호 2 | 27,272엔 | 23,927엔 | 27,980엔 |
| 요개호 3 | 34,444엔 | 31,099엔 | 35,151엔 |
| 요개호 4 | 37,499엔 | 34,154엔 | 38,206엔 |
| 요개호 5 | 40,233엔 | 36,888엔 | 40,940엔 |

| | | |
|-------------------|-------------------|-------------------|
| 방세 11,100엔 / 월 | 방세 49,200엔 / 월 | 방세 59,100엔 / 월 |
| 식비 (41,400엔 / 월) | | |
| 일상생활비, 이미용비 등 | | |

◇ 이 밖에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용자가 선택하는 서비스에 따라 비용이 추가됩니다.

◇ 기저귀비는 개호보험에 포함됩니다.

※ 식비·방세는 국가(일본)가 제시하는 표준적인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요금은 각 시설에 문의해 주십시오.

※ 수입이 적은 분을 대상으로 한 식비 및 방세가 경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32페이지).

개호 노인 보건시설 및 개호 영양형 의료시설 입소 신청방법

각 시설이 정한 소정의 신청서를 각 시설에서 입수하여 직접 시설에 신청합니다.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과 상담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입소 신청

계약



* 대략적인 본인 부담 기준 10% 부담인 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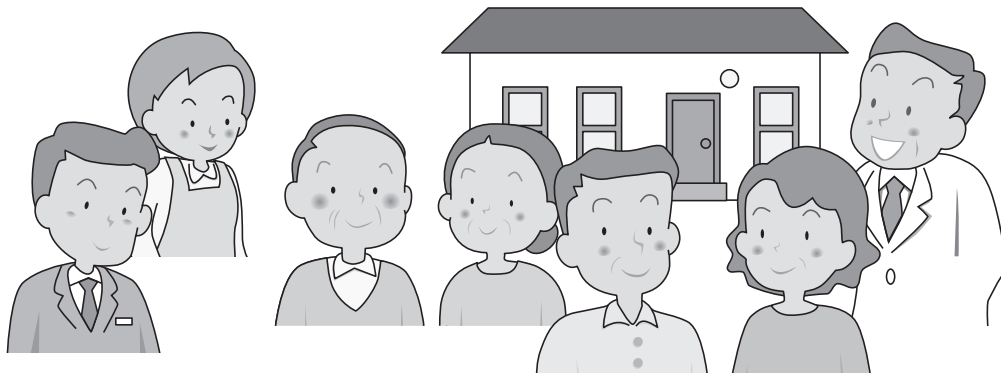
서비스 이용자 부담에 대하여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서비스 비용의 10%*를 부담합니다.

서비스 비용의 10%* 이외에 식비·방세를 부담합니다. 식비·방세 등은 이용할 경우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업자별로 다릅니다.

| ①거택 서비스 ②지역 밀착형 서비스 를 이용한 경우(요지원 1·2, 요개호 1~5 공통) | | | |
|---|----------------|----|---------------------|
| 방문 개호 · 방문 입욕 개호 · 방문 간호 방문 재활치료 · 거택 요양 관리지도 등 | 서비스 비용의 10% | | |
| 통소 개호 통소 재활치료 등 | 서비스 비용의 10% | 방세 | 식비, 일상생활비 |
| 단기 입소 생활 개호 (쇼트 스테이) 단기 입소 요양 개호 | 서비스 비용의 10% | 방세 | 식비, 일상생활비 (이미용비 등)* |
|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등 | 서비스 비용의 10% | 방세 | 식비, 일상생활비 |
| ③시설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개호 노인 복지시설(특별 양호 노인홈)은 원칙적으로 요개호3 이상, 그 밖의 시설 서비스는 요개호 1~5) | | | |
| 개호 노인 복지시설 (특별 양호 노인홈) 개호 노인 보건시설 ·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 서비스 비용의 10% | 방세 | 식비, 일상생활비 (이미용비 등)* |

※쇼트 스테이와 시설 서비스는 기저귀비 부담은 없습니다.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경우는 별도로 이용자 부담이 있습니다.

- 특별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보험의 10% 부담과는 별도로 이용자 부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예1) 재택 서비스의 경우 사업소가 평소 서비스를 실시하는 지역 외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의 교통비
- (예2) 개호보험 대상이 아닌 서비스 및 본인의 케어 플랜에 없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등
(이용자와 사업자가 개호보험 외 서비스를 계약한 후 전액 이용자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단, 2015년 8월 이후는 일정 이상 소득(본인 합계 소득 금액이 160만엔 이상 등)이 있는 경우, 20% 부담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9페이지 참조)

이용 가능한 서비스 / 서비스 이용자 부담에 대하여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에 대하여.....

2015년 8월부터 일정 이상 소득이 있는 분의 이용자 부담 비율이 변경됩니다.

● 내 용

제1호 피보험자(만 65세 이상)분 가운데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의 이용자 부담 비율이 2015년 8월 1일부터 20%가 됩니다. 그러나 1개월 이용자 부담에는 상한 액(고액 개호 서비스비 31페이지)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의 부담이 2배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 부담 비율 판정

| 비율 | 대상자 | 기준 |
|-----|--|---|
| 20% | 제1호 피보험자 (만 65세 이상의 분) |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1)이 160만엔 이상으로 또한, 동일 세대에 만 65세 이상의 분이 본인 한 사람뿐이며 “연금 수입 +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2)”이 280만엔 이상인 분 (2명 이상의 경우는 합계가 346만엔 이상) |
| 10% | 다음 중 해당 사항이 있는 분은 10%가 됩니다. ① 생활보호 등 수급자 ② 본인이 시민세 비과세인 분 ③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160만엔 미만인 분 ④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160만엔 이상으로 동일 세대에 만 65세 이상의 분이 본인 한 사람뿐이며 “연금 수입 +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2)”이 280만엔 미만인 분(2명 이상의 경우는 합계가 346만엔 미만) ⑤ 구조치 입소자의 분(2000년 4월 1일 이전부터 시초촌(市町村)의 조치로 특별 양호 노인 홈에 입소하고 있는 분) ⑥ 제2호 피보험자인 분(만 40세부터 만 64세까지의 분) | |

※1... 합계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5페이지 “보험료 안내”의 ※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이란 합계 소득 금액부터 공적 연금 등과 관련되는 소득 금액(잡소득)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개호보험 부담 비율증

2015년 8월 1일 이후에는 이용하고 계시는 개호 서비스 사업소 등에 개호보험증과 함께 ‘개호보험 부담 비율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2015년 7월 초순까지
요개호(지원) 인정을 받으신 분

2015년 7월 중순경에 각
구야쿠쇼(구청)가 일제히 송부합니다.

2015년 7월 초순 이후, 새롭게
요개호(지원) 인정을 받으신 분

요개호(지원) 인정 결정 시에
개호보험증과 함께 송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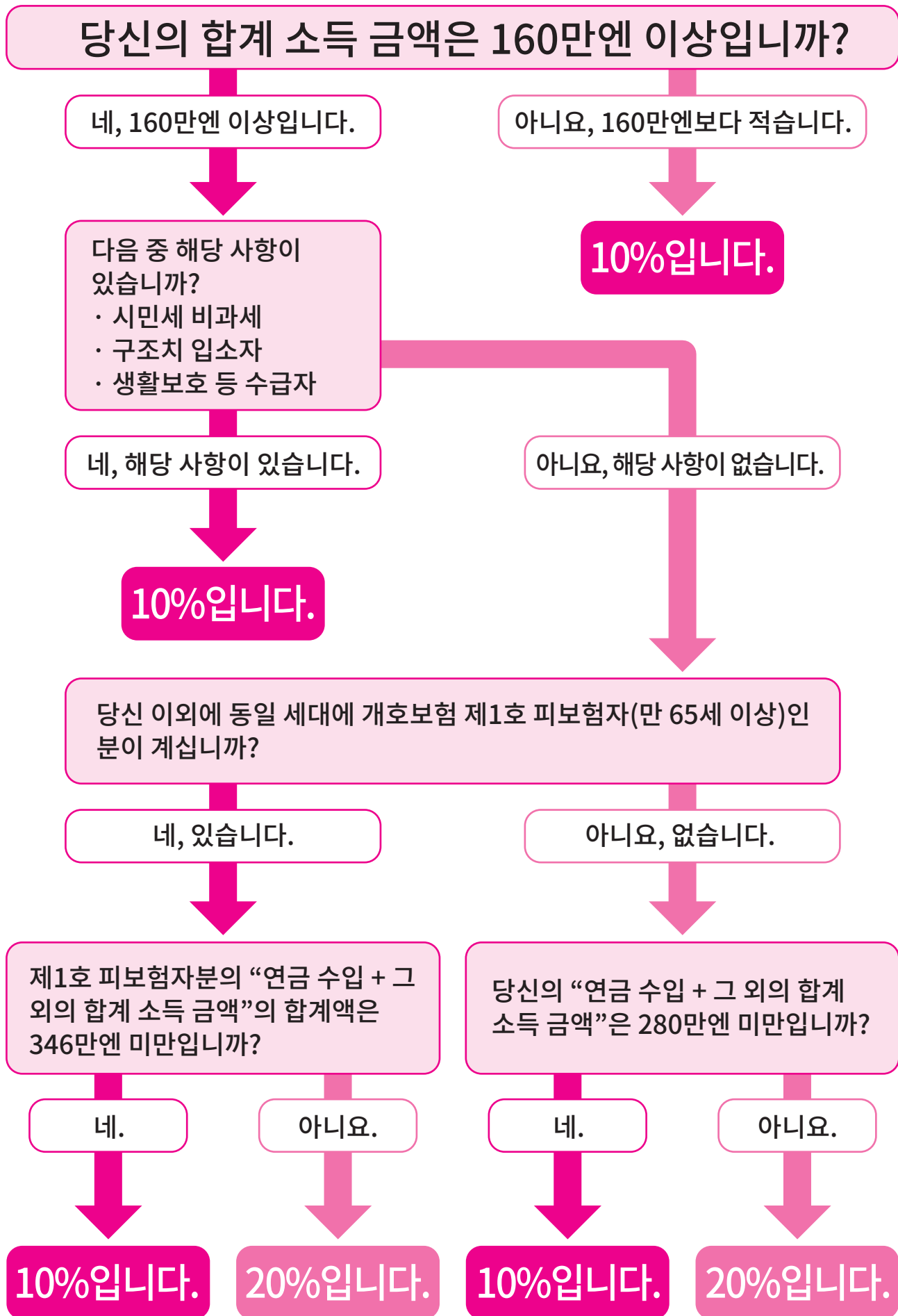
부담 비율이 기재됩니다.

| 介護保険負担割合証 | |
|-------------------|--|
| 交付年月日 平成XX年XX月XX日 | |
| 番 号 | 1 2 3 4 5 6 7 8 9 0 |
| 被 保 険 者 住 所 | 123-4567 横浜市中区港町1-1 市庁舎8階 健康福祉局高齢健康福祉部介護保険課 |
| 氏 名 | あいうえお かきくけこ |
| 生年月日 | 昭和10年11月12日 性別 男 |
| 利用者の負担割合 | 適 用 期 間 |
| X 割 | 開始年月日 平成XX年XX月XX日 終了年月日 平成XX年XX月XX日 |
| X 割 | 開始年月日 平成XX年XX月XX日 終了年月日 平成XX年XX月XX日 |
| 保険者番号並びに保険者の名称及び印 | X X X X X X 公印 横浜市 |

※ 부담 비율증의 이미지입니다. 실물과 이미지는 다릅니다.

매년 8월 1일에 이용자 부담 비율에 대해 판정을 합니다.

〈판정 방법〉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에 대하여 방세(거주비·체류비)·식비 부담 경감 <개호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증>

● 내 용

시설 입소 및 단기 입소(쇼트 스테이) 이용 시의 방세(거주비·체류비)·식비는 일반적으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낮은 분이 서비스 이용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소득에 따른 부담 한도액이 마련되어 본인 부담이 경감됩니다.

세대·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단계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표2)

● 이용의 흐름

~ 구청에 신청 ~

본 서비스(특정 입소자 개호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여 인정을 받으면 '개호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이 교부됩니다.

~ 시설에 제시 ~

시설에 '개호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방세·식비의 본인 부담이 표2 '부담 한도액'의 금액으로 감액됩니다.

● 대상이 되는 서비스

- 시설 서비스(특별 양호 노인홈·개호 노인 복지시설·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요양 개호

부담 한도액(일액)

표2 국가(일본)가 규정한 기준 비용액(일액) 표3

| 단계 | 대상자 | 부담 한도액 | | 방세 | | 식비 |
|-------|---|--|--------|------|--|--|
| | | 방세 | 식비 | 방세 | 식비 | |
| 제1 단계 | · 시민세 비과세 세대(※1)이며 노령복지연금을 받고 있는 분 · 생활 보호 등을 받고 있는 분 | 다인실 | 0엔 | 300엔 | 다인실 (특별 양호 노인홈 등~2015/7) 370엔 (특별 양호 노인홈 등 2015/8~) 840엔 (개호 노인 보건시설·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등) 370엔 | 1,380엔 |
| | | 종래형 개인실 (특별 양호 노인홈 등) | 320엔 | | | |
| | | 개호 노인 보건시설·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등 | 490엔 | | | |
| | | 유닛형 준 개인실 | 490엔 | | | |
| | | 유닛형 개인실 | 820엔 | | | |
| 제2 단계 | · 시민세 비과세 세대(※1) 인 분으로 함께 소득 금액과 공적 연금 등 수입액의 합계가 연간 80만엔 이하인 분(※2) | 다인실 | 370엔 | 390엔 | 종래형 개인실 (특별 양호 노인홈 등) 420엔 (개호 노인 보건시설·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등) 490엔 | 유닛형 준 개인실 490엔 유닛형 개인실 820엔 |
| | | 종래형 개인실 (특별 양호 노인홈 등) | 420엔 | | | |
| | | 개호 노인 보건시설·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등 | 490엔 | | | |
| | | 유닛형 준 개인실 | 490엔 | | | |
| | | 유닛형 개인실 | 820엔 | | | |
| 제3 단계 | · 시민세 비과세 세대(※1) 인 분으로 상기 제2단계 이외인 분(※2) | 다인실 | 370엔 | 650엔 | 유닛형 준 개인실 1,310엔 유닛형 개인실 1,310엔 | 유닛형 개인실 1,640엔 유닛형 개인실 1,970엔 |
| | | 종래형 개인실 (특별 양호 노인홈 등) | 820엔 | | | |
| | | 개호 노인 보건시설·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등 | 1,310엔 | | | |
| | | 유닛형 준 개인실 | 1,310엔 | | | |
| | | 유닛형 개인실 | 1,310엔 | | | |
| 제4 단계 | · 상기 이외의 분 | · 제4단계 분에게는 부담 한도액이 설정되지 않습니다. · 식비나 방세는 시설과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 | | | |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에 대하여

부담 한도액 제4단계에 해당하는 분의 특례 <특례 감액 조치>

2명 이상의 세대(※1)가 개호 보험 시설에 입소하여 방세·식비를 부담한 결과, 아래의 요건(아래 표)을 전부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청에 신청하시면 부담 한도액이 제3단계로 경감됩니다.

| 특례 감액 조치 대상자 요건 | 특례 감액 조치 내용 |
|---|---|
| ① 제4단계 방세·식비를 부담하고 있다. ② 세대(※1)의 연간 수입에서 시설 이용자 부담(본인 부담, 방세·식비 연간 예상액)을 제외한 금액이 80만엔 이하이다. ③ 세대(※1)의 예저금 등 합계가 450만엔 이하이다. ④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산 이외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 ⑤ 개호보험료 체납이 없다. | 왼쪽의 요건 ②에 해당하지 않을 때까지 식비 또는 방세 또는 이 2가지 모두에 대해 부담 한도액 제3단계의 부담 한도액을 적용 처리합니다. |

※1 세대...본인이 속한 주민 기본대장(基本台帳) 상의 세대(2015년 8월 이후는, 배우자가 다른 세대에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2 2015년 8월 이후 다음 조건이 추가됩니다.

·보인 예저금 합계가 1,000만엔 이하(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의 예저금 합계가 2,000만엔 이하)인 분.

방세, 식비의 차액 환급

개호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을 교부받은 분 가운데 부득이하게 시설에 제시하지 못하고 표2의 '부담 한도액'을 초과하여 표3의 '국가(일본)가 규정한 기준 비용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지불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보험연금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 지불한 금액이 표3의 '국가(일본)가 규정한 기준 비용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차액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시설에 지불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차액 지급 신청 시에 필요한 것】

· 개호보험증 · 방세, 식비 영수증 · 인감(인주를 사용하는 것) · 입금 계좌 확인이 가능한 자료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에 대하여.....

고액 의료 · 고액 개호 합산제도

각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조합 등의 사회보험(이하 ‘피용자보험’이라 합니다.)),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과 ‘개호보험’의 본인 부담 1년간 합계액이 고액이 된 경우에 규정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신청 시 영수증은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보험연금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고액 의료 · 고액 개호 합산제도의 세대 부담 한도액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12개월 간의 합계

| | |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 개호보험 | 피용자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 + 개호보험 (만 70~74세인 분이 있는 세대) | 피용자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 + 개호보험 (만 70세 미만인 분이 있는 세대) | | |
|----------------|--------------------------|-----------------------------|--|---|-----------|-------|
| | | | | 2014/8~2015/7 | 2015/8 이후 | |
| ※ 한도액 구분 | 현역 수준의 소득자 (상위 소득자) | 규다다사가키(舊但書) 소득 901만엔 이상 | 67만엔 | 67만엔 | 176만엔 | 212만엔 |
| | | 규다다사가키(舊但書) 소득 600~901만엔 이하 | | | 135만엔 | 141만엔 |
| | 일 반 | 규다다사가키(舊但書) 소득 210~600만엔 이하 | 56만엔 | 56만엔 | 67만엔 | |
| | | 규다다사가키(舊但書) 소득 210만엔 이하 | | | 63만엔 | 60만엔 |
| | 주민세비과세 | 저소득II | 31만엔 | 31만엔 | 34만엔 | |
| | | 저소득I | | | | |

※대상연도의 말일(7월 31일)에 가입 중인 의료 보험의 고액 의료비 한도액 구분을 적용합니다.

그 밖의 이용자 부담 경감

개호 서비스 본인 부담 지원(요코하마시 자체제도)

● 내 용

수입 및 소득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택 서비스 및 치매 고령자 그룹 홈을 이용할 때의 개호 보험 서비스 이용자 부담(통상 10%)과 특별 양호 노인홈 등의 개인실 유닛 시설 거주비가 경감됩니다

● 재택 서비스 이용자 부담 지원

< 대상 서비스 >

| | | |
|------------------|-------------------------|--|
| (개호 예방) 방문 개호 |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 (개호 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
| (개호 예방) 방문 입욕 개호 |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요양 개호 | 정기 순회 · 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
| (개호 예방) 방문 간호 | (개호 예방)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
| (개호 예방) 방문 재활치료 | 지역 밀착형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 ※표시가 있는 서비스는 단기 이용(소프트 스테이)인 경우에 한해 대상이 됩니다. |
| (개호 예방) 통소 개호 | (개호 예방)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 |
| (개호 예방) 통소 재활치료 |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 |
| (개호 예방) 복지유구 대여 | (개호 예방) 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 | |

< 지원 대상 요건 및 지원 내용 >

| 지원 단계 | 제1단계 | 제2단계 | 제3단계 |
|----------|--|--|--|
| 지원 대상 요건 | 생활보호 수급자를 제외한 개호보험료 제1단계인 분 | 시민세 비과세 세대 가운데 연간 수입 예상액의 합계가 150만엔 이하인 분 ※2명 이상인 세대의 경우는 상기 요건과 아울러 해당 피보험자를 제외한 세대 구성원 1명당 50만엔을 더한 금액 이하가 되는 분 | 제2단계 이외인 분 |
| | | 합계 소득 금액과 과세 연금 수입액 및 기타 수입액 합계가 80만엔 이하인 분 | |
| 자산 기준 | 금융자산(현금, 예저금, 유가증권)이 350만엔 이하(2명 이상인 세대의 경우는 해당 피보험자를 제외한 세대 구성원 1명당 100만엔을 더한 금액 이하)이며 또한 거주용 토지(200㎡이하) 및 가옥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
| 지원 내용 | 이용자부담을 3%로 경감 또한 나머지 본인 부담액이 4,500엔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지원 | 이용자부담을 5%로 경감 또한 나머지 본인 부담액이 7,500엔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지원 | 이용자부담을 5%로 경감 또한 나머지 본인 부담액이 12,300엔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지원 |

● 그룹 홈 지원

〈 대상 서비스 〉 <개호 예방>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 단기 이용(쇼트 스테이)이외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요건 및 지원 내용 〉

| 지원 단계 | | 제1단계 | 제2단계 | 제3단계 |
|----------------------------------|---------|---|--|---|
| 지원 대상 요건 | 수입 기준 등 | 생활보호 수급자를 제외한 개호보험료 제1단계인 분 | 시민세 비과세 세대이며 연간 수입 예상액의 합계가 150 만 엔 이하인 분 ※2명 이상인 세대의 경우는 상기 요건과 아울러 해당 피보험자를 제외한 제외한 세대 구성원 1명당 50만엔을 더한 금액 이하가 되는 분 | 제2단계 이외인 분 |
| | 자산 기준 | 금융자산(현금, 예저금, 유가증권)이 350만엔 이하 (2명 이상인 세대의 경우는 해당 피보험자를 세대 구성원 1명당 100만엔을 더한 금액 이하)이며 또한 거주용 토지(200㎡이하) 및 가옥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
| | 기타 요건 | · 3개월 이상 요코하마시에 거주하고 있다 · 세법상 피부양자가 아니다 | | |
| 지원 내용 | | 이용자 부담을 5%로 경감 또한 나머지 본인 부담액이 7,500엔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지원 | | 이용자 부담을 5%로 경감 또한 나머지 본인 부담액이 12,300엔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지원 |
| 집세·식비·수도광열비는 월액 29,800엔을 상한으로 지원 | | | | |

● 시설 거주비 지원

〈 대상 서비스 〉 시설 서비스[개호 노인 복지시설(특별 양호 노인홈),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시설, 개호 노인 보건시설,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요양 개호

〈 지원 대상 요건 및 지원 내용 〉

| 지원 단계 | | 제1단계 | 제2단계 |
|----------|---------|--|-------------------------------------|
| 지원 대상 요건 | 수입 기준 등 | 생활보호 수급자를 제외한 개호보험료 제1단계이며 연간 수입 예상액의 합계가 50만엔 이하인 분 | 시민세 비과세로 연간 수입 예상액의 합계가 50 만엔 이하인 분 |
| | 자산 기준 | ※2명 이상인 세대의 경우는 상기 요건과 아울러 해당 피보험자를 제외한 세대 구성원 1명당 50만엔을 더한 금액 이하가 되는 분 금융자산(현금, 예저금, 유가증권)이 350만엔 이하(2명 이상인 세대의 경우는 해당 피보험자를 제외한 세대 구성원 1명당 100만엔을 더한 금액 이하)이며 또한 거주용 토지(200㎡ 이하) 및 가옥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 |
| | 기타 요건 | · 개호 부담 한도액 인정을 받고 있다 · 세법상 피부양자가 아니다 | |
| 지원 내용 | | 유닛형 개인실 주거비를 월액 : 5,000엔 정도 지원(일액 :165 엔) | |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에 대하여

● 이용의 흐름

개호 서비스 본인 부담 지원(재택 서비스 이용자 부담 지원, 그룹 홈 지원, 시설 거주비 지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을 받으면 지원증이 교부됩니다.

지원증을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경감된 이용자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보험연금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개호 서비스 본인 부담 지원과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의 2가지 모두를 이용할 경우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

사회복지법인이 실시하는 특별 양호 노인홈 입소, 방문 개호, 통소 개호,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등의 이용자 부담액이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복지국 고령시설과(전화 045-671-3923)에 문의해 주십시오.

| 대상자 요건 | 지원 내용 |
|---|---|
| · 시민세 비과세 세대 · 수입 기준(단신자 세대로 150만엔 이하) · 자산 기준(단신자 세대로 350만엔 이하, 거주용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 이용자 부담액(10%부담 · 식비 · 방세)을 25%등 경감 |
| · 생활보호 수급자 | 특별 양호 노인홈 입소 등의 개인실 이용 부담액(방세)을 100% 경감 |

원폭 피폭자 개호보험 등 이용 피폭자 지원 사업

● 내 용

피폭자 건강 수첩을 교부받은 분은 일부 개호 보험 서비스를 이용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나가와현 보건예방과(045-210-4907)에 문의해 주십시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신속하게 신고해 주십시오

교통사고 및 상해 사건 등 제3자(가해자)에 의한 상해가 원인으로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개호 비용의 부담방법이 다르므로 ‘제3자의 행위와 관련된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에는 경찰의 교통사고 증명서 등도 필요하므로 거주하시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와 신속하게 상담해 주십시오.

● 개호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어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한 필요한 개호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개호 비용 보험 급부 분은 요코하마시가 일시 대납하며, 추후에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 만약 합의를 하면 . . .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상의하여 합의가 성립되면 그 합의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개호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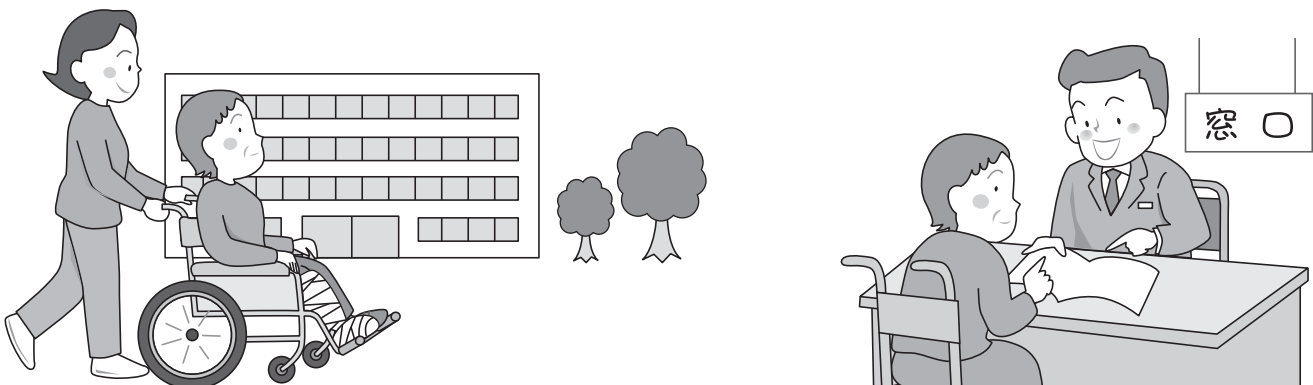
합의 성립 후에 이용한 서비스는

① 이미 요코하마시에서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개호 비용을 지불한 경우는 2중 지불을 피한다는 취지에서 요코하마시가 피보험자(피해자)에게 해당 비용의 반환 청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② 요코하마시가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개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합의로 받은 개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분은 요코하마시에서 보험 급부를 할 수 없으므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합의를 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합의하지 않으면 피보험자(피해자)에게 막대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할 경우는 사전에 연락을 하시고 동시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는 신속하게 합의서 사본을 거주하시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고령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 증진·개호 예방 서비스

요코하마시는 ‘건강 수명※ 일본 제일’을 목표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몇 살이 돼도 가능한 한 자립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 증진·개호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 수명이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일상생활이 제한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겐키즈쿠리(건강 증진) 스테이션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지역에서 친구들과 함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활동하는 그룹활동(겐키즈쿠리 스테이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곳 이상의 겐키즈쿠리 스테이션이 근력 운동, 체조, 걷기, 건강 마작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겐키즈쿠리 스테이션에 참가하셔서 건강하고 보람찬 활동적인 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코하마 시니어 볼런티어 포인트

만 65세 이상의 시민께서 개호 시설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면 포인트가 쌓여 기부나 환금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5 페이지 참조)

●건강 증진·개호 예방에 관한 강좌 개최

로코모티브 신드롬※이나 치매 등 개호가 필요해지는 원인 예방이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식사·영양이나 구강 건강에 대해 배우거나 체험하는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

체력에 자신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외출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구청의 보건사, 간호사, 치과 위생사, 영양사가 자택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대해 조언을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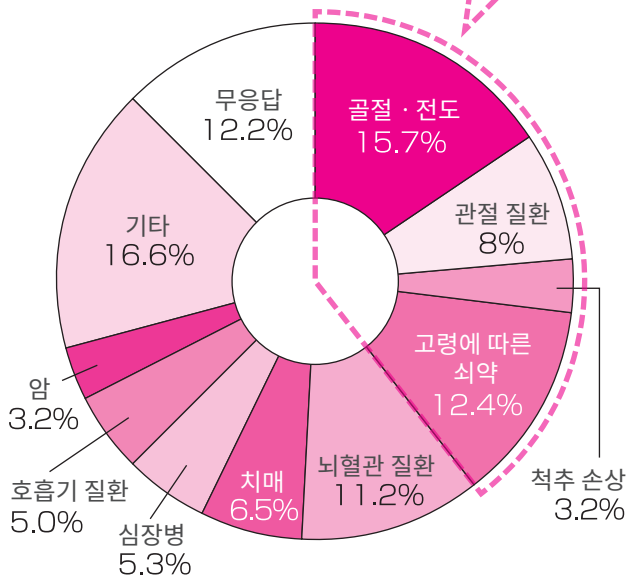
로코모를 아시나요?

※로코모는 로코모티브 신드롬의 약칭입니다.

가령(加齡)에 따른 근력 저하나 골·관절 질환 등 운동기 장애로 ‘서다, 앉다, 건다’ 등 이동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개호가 필요해진 이유를 아시나요?

약 2.5명에 1명은 로코모가 원인입니다.



(2013년도 요코하마시 고령자 실태 조사)

로코모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 ① 슬통·요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으세요!
- ② 워킹, 스트레칭과 함께 ‘하마토레’ 등 근력 운동을 계속하세요! ‘하마토레’ 동영상은 요코하마시의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ハマトレ動画

- ③ 뼈와 근육을 강하게 하는 식사를 하세요!

근육을 단련한다

고기, 물고기, 계란 등 단백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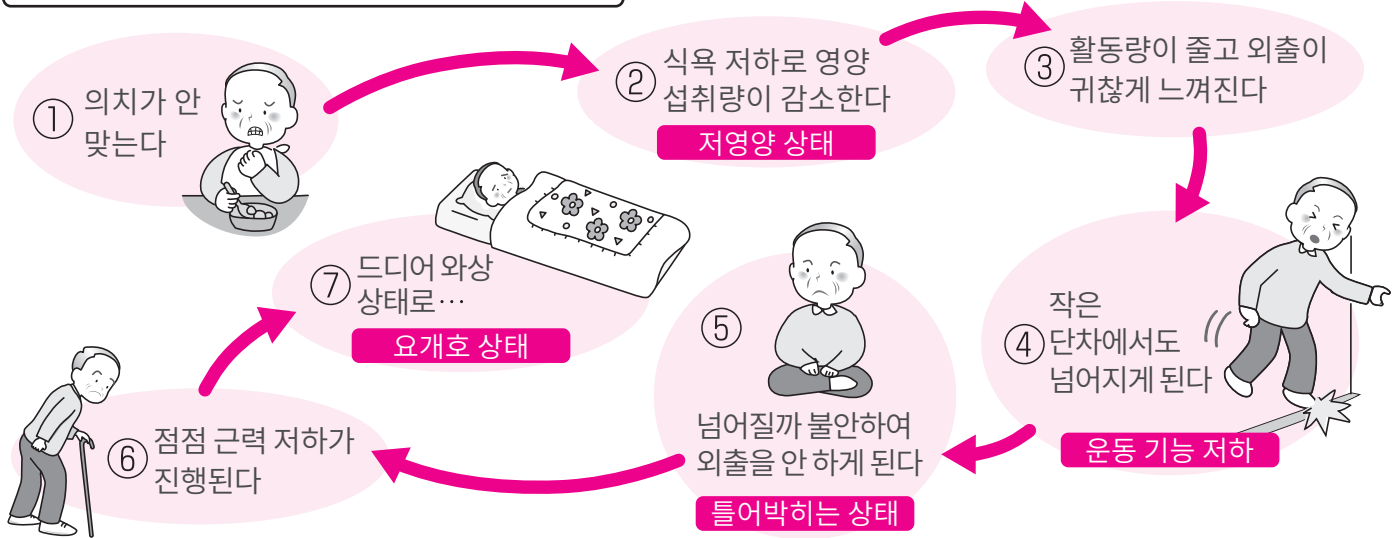
뼈를 튼튼하게 한다

칼슘이나 비타민 D·K를 포함한 우유, 요구르트 등 유제품이나 해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짐을 알아보세요

와상 상태 등 중(重)도 요개호 상태가 되는 계기는 ‘의치가 안 맞는다’ ‘넘어지는 일이 많아졌다’ 라는 대수롭지 않은 일부부터입니다. 이런 조짐을 미리 알아차리시고 건강 증진(개호 예방)을 위해 노력해 보세요!

노화 조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체크 결과

1 본인의 다리로 계속 걸을 수 있도록 단련을 시작해보세요!
 내 다리로 걷기는 누구나 바라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은 저하됩니다.
 ○보수계를 휴대하여 워킹을 시작해보세요.
 ○걷기 위한 근력이나 균형 향상을 위해서 로코모 예방 트레이닝 ‘하마토레’ 등 체조를 시작해보세요.

2 근력, 체력, 저항력을 향상을 돕는 식사를 하세요!
 나이가 들에 따라 단백질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식사를 선호하게 되어 단백질 섭취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에 세끼. 주식·주채(主菜)(고기·생선·콩 가공제품 등)와 부채(副菜)(야채)를 섭취하세요.
 ○수분은 충분히 섭취하세요. (심장 신장 등에 질환이 있는 분은 주치의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잘 씹고 삼키는 힘을 단련하세요!
 식사를 위해서는 이 맞물림과 삼키는 힘이 중요합니다.
 ○양치와 입 체조를 계속하세요.
 ○의치의 손질이나 조정 등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으세요.

10개 이상
해당하신 분은

전반적인 생활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GoGo 건강!’ 생활을 시작하세요! 사회적인 참가가 활발한 사람은 일상생활 동작에 장애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역 활동(겐키즈쿠리 스테이션 등)에 참가하세요.

개호보험 이외의 서비스

요코하마시에서는 개호보험 서비스와 별도로 원호가 필요한 고령자분의 재택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호보험의 급부 대상이 아닌 분에게도 자립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청 고령·장애 지원과 또는 가까운 지역 케어 플라자 등의 지역 포괄 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재택 요원호 고령자에게 대한 지원

재택에서 원호가 필요한 고령자분의 신체 상황 및 개호자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호보험 대상 서비스와는 별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안심 전화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등의 고령자분을 대상으로 이웃 분이나 구급기관과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기에 통보 장치를 설치합니다. 이용할 때는 자택에 고정 전화 회선과 전화기가 있어야 합니다.

고정 전화 사용에 필요한 요금의 지불과 아울러 시민세 과세 세대자는 매월 702엔의 통보 장치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주거 환경 정비

요지원 또는 요개호로 인정된 분중 필요성이 인정된 분에게 신체 상황에 맞춘 주택 개조 상담·조언 및 소득 상황에 따른 개조비 지원을 합니다(지원 한도 기준액 100만엔). 생계 중심자의 시민세액에 따라 부담 없음·1/10·1/4·1/2·3/4·전액 중 어느 하나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반드시 사전에 구청 고령·장애 지원과와 상담해 주십시오. 공사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 개호보험의 주택 개수비 지급(상한 20만엔)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식사 서비스

혼자 사는 중증도 요개호자(요개호 2이상 및 요개호1, 요지원1·2의 일부) 등으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분 가운데 식사에 관한 서비스 이용 조정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에게 영양의 균형이 잡힌 식사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며, 아울러 안부를 확인합니다(1일 1식, 주 5일까지). 사업소별로 설정한 식재료비 등의 실비 상당액(700엔 이내. 단, 치료식인 경우는 700엔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을 본인 부담합니다.

※ 케어 매니저 및 지역 포괄 지원센터(지역 케어 플라자 등)에서 사전 상담(이용 조정)을 해야 합니다.

종이 기저귀 급부

생활보호 세대 또는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을 대상으로 요개호 1~5로 인정된 상태로 와상 상태 또는 치매 상태에 있으며 또한, 집에서 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 종이 기저귀를 급부합니다. 생활보호 세대 등은 무료, 시민세 비과세 세대는 10%의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요개호도에 따라 이용 상한 기준액이 있습니다.

방문 이미용 서비스

요개호 4·5로 인정된 분 등으로 이·미용원에 가기 어려운 재택고령자에게 출장에 의한 이·미용 서비스(컷 한정, 본인 부담액은 1회당 2,000엔을 연 6회까지)를 실시합니다.

안심 전화

대략 만65세 이상의 요개호 또는 요지원으로 인정된 분으로 대중 교통기관(택시 포함)을 이용한 외출이 어려운 분(요지원인 분은 신청 시에 확인합니다)에게 전용 차량으로 자택과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의 구간을 송영합니다. 이용 거리에 따른 본인 부담(2km까지 300엔, 이후 1km 마다 150엔 증가)입니다. 문의: 각 구의 사회복지협의회

자립 지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만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고령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활 지원 쇼트 스테이

요코하마시의 피보험자로 요지원 또는 요개호로 인정되지 않은 약 만 65세 이상인 분 가운데 개호자의 부재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혼자 살기 어려운 분이나 재택 생활을 계속하면 본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 등이 양호 노인홈 등에 단기 입소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받습니다. 본인 부담은 1일당 530엔, 식비, 체류비입니다.

※시설에 의한 송영을 받은 경우는 편도 194엔을 가산. ※생활보호 세대 대상인 분은 식비와 실비 이외는 무료.

※본인 부담·송영 가산은 2014/4 시점 개호 보수 단위를 바탕으로 산출

가정 방문

건강증이 걱정되는 분이나 체력에 자신이 없는, 기분이 쉽게 가라앉은 분 등을 대상으로 구청의 보건사, 간호사, 영양사, 치과 위생사가 자택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관한 조언을 합니다.

방문 치과 진료

치과 진료소 통원이 어려운 재택 와상 상태 고령자분 등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에 의한 치과 진료(보험 진료)를 실시합니다. 또한 요코하마시 치과 보건 의료센터에서는 상기의 대상자 외에 입원 환자(시설 입소자), 재택 중증 심신 장애아(인)를 대상으로 방문에 의한 치과 진료(보험 진료)를 실시합니다.

문의 : 요코하마시 치과의사회 TEL.045-681-1553

치매 고령자에 대한 지원

치매 고령자 보건복지 상담(건강증 상담)

치매 고령자분이나 그 가족 등에게 전문의, 사회 복지사, 보건사 등이 보건·의료·복지에 대한 상담을 면접·방문을 통해 실시합니다.

치매 고령자 긴급 대응

재택 치매 고령자께서 증상의 급박한 악화 등으로 재택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긴급 상담 및 전문의료기관에 긴급 일시 입원 등을 통해 본인의 안전한 생활 확보 및 개호자의 부담 경감을 도모합니다.

요코하마 치매 콜 센터

치매 고령자분과 그 가족 등의 각종 상담에 대해 치매 개호 경험자 및 전문가 등이 정신적인 면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전화 상담을 통해 실시합니다. 상담 내용에 따라 지역 포괄 지원센터·개호 서비스 사업자·의료기관 등의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야미사요나라

TEL.045-662-7833 실시일 : 화·목·금요일(오전 10시 ~ 오후 4시)(공휴일 포함. 연말연시 제외.)

요코하마시 치매 질환 의료 센터

보건 의료·개호 기관 등과 연계하면서 치매 질환에 관한 감별 진단, 주변 증상, 신체 합병증에 대한 급성기 치료, 전문 의료 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종합보험의료재단 요코하마시 종합보험의료센터진료소 종합상담실
TEL.045-475-0103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45분~오후 5시 30분(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 사회복지법인 온시(恩賜)재단 사이세이카이(濟生會)지부 가나가와현 사이세이카이 요코하마시 도부(東部)병원 요양복지상담실
TEL.045-576-3000(대표)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 의료법인 세키아이카이(積愛會) 요코하마 마이오카 병원 의료상담실
TEL.045-822-2169 월요일~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 공립대학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 부속병원 복지·계속간호상담실
TEL.045-787-2852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개호보험 이외의 서비스

장애가 있는 분에 대한 지원

개호보험 서비스의 급부 대상이 되는 장애가 있는 분 가운데 개호보험에 없는 서비스 및 개호보험의 보험 급부보다 더 긴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 시책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후천성 장애인 지역활동센터

대략 만40세~64세의 뇌혈관 질환 등의 후유증에 의한 재택 후천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 구의 후천성 장애인 지역 활동센터에서 ①재활치료 교실 사업, ②활동센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재활치료 교실 사업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기능 훈련 및 친구 만들기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활동센터 사업

사회 참가를 위한 활동의 장이 필요한 분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창작 활동, 지역 교류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동일은 평일입니다.

장애인 수첩 교부

장애 중별 및 정도에 따라 신체장애인 수첩, 요육 수첩(사랑의 수첩), 정신 장애인 보건복지 수첩이 교부되며, 장애인 종합 지원법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 지원법 서비스의 제공

장애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 종합 지원법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사업(재택 서비스)은 홈 헬프, 이동 개호, 단기 입소, 그룹 홈 등입니다.

고액 장애 복지 서비스 등 급부비

① 1명의 이용자가 개호보험과 장애 복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경우, ②동일 세대 내에 장애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 2명 이상 있는 경우 등,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용자 부담의 합계액이 일정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 밖의 지원

쓰레기 반출 수거

| 수거 종류 | 후레아이 수거 (가정 쓰레기 반출 수거) | 대형 쓰레기 반출 수거 |
|-------|---|--|
| 내용 | 대상자의 자택 부지 내 및 현관 앞에서 직접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 후레아이 수거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대상자의 자택을 방문합니다. ※ 수거시에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은 경우 등에 안부 확인을 위해 인터폰 등으로 확인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상자의 자택 부지 내 또는 옥내까지 들어가 대형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 접수에서 수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거일은 희망에 따라 결정할 수 없으므로 미리 양해해 주십시오. ※ 대형 쓰레기를 반출하기 위해서 다음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반출 수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해가 필요한 대형 쓰레기 · 다른 가구의 이동이 필요한 대형 쓰레기 · 밧줄 등으로 매달아 올리거나 내려야 하는 대형 쓰레기 |
| 대상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족 및 가까운 사람의 협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직접 가정 쓰레기를 쓰레기 집적장소(대형 쓰레기는 지정 장소)까지 반출할 수 없는 혼자 사시는 분 . 또한,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동거인이 고령자나 연소자 등으로 가정 쓰레기를 쓰레기 집적장소(대형 쓰레기는 지정 장소)까지 반출할 수 없는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①신체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은 분, ②사랑의 수첩을 교부받은 분, ③정신 장애인 보건복지 수첩을 교부받은 분, ④개호보험의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분, ⑤쓰레기를 반출하기 곤란한 만 65세 이상인 분, ⑥임산부 및 부상을 당한 분 등으로 사업소장이 인정한 분(대형 쓰레기만 해당) ※ 대형 쓰레기 반출 수거에서는 가족(배우자 및 비혈연 관계를 포함한 부모·자녀·형제자매)이 대상자와 같은 구내 또는 가까운 구에 거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문의 : 거주하시는 구의 자원순환국 사무소 신청 : 접수시간 월~토(공휴일 포함) 오전 8:00~ 오후 4:45

우편 등을 통해 자택 등에서 부재자 투표가 가능한 제도

요개호5 또는 중증 장애가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또한, 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편 등 투표증명서를 교부받고 있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주십시오.

내 용 우편 등을 통해 자택 등에서 부재자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거 시에 투표일의 4일 전까지 우편 등 투표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를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전에 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대리 기재인 1명(선거권을 갖춘 사람)에게 투표에 관한 기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우편 등을 통한 부재자 투표 대리 기재제도).

①신체 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으시고 팔 또는 시각 장애의 정도가 1급인 분

②전상병자 수첩을 교부받으시고 팔 또는 시각 장애의 정도가 특별항증에서 제2항증까지인 분

문의 : 각 구의 선거관리위원회

공공요금 · 세금 경감

소득세 · 주민세(시민세 · 현민세)의 개호보험 서비스 의료비 공제

1년 동안 일정액(10만엔 또는 그해의 소득 합계가 200만엔까지인 경우는 그 5%의 금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불하신 경우, 확정 신고를 하시면 의료비 공제로서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개호보험을 이용하여 지불한 비용의 일부도 의료비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서비스

- ① 의료계의 서비스[방문 간호, 방문 재활치료, 통소 재활치료, 단기 입소 요양 개호, 거택 요양 관리지도, 정기 순회 · 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일체형 사업사에서 방문 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 ② ①의 서비스와 함께 이용하는 거택 서비스[방문 개호 가운데 신체 개호 및 통원 등 승하차 보조, 방문 입욕 개호, 통소 개호, 단기 입소 생활 개호, 정기 순회 · 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방문 간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연계형 사업소인 경우),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 ③ 시설 서비스(특별 양호 노인홈, 개호 노인보험시설 또는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시에 지불한 본인 부담액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를 통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기재한 '거택 서비스 이용료 영수증', '지정 개호 노인 복지시설 등 이용료 등 영수증' 등을 받아 주십시오. 세무서 등에서 의료비 공제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 의료비 공제액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계산할 경우는 고액 개호 서비스비 및 고액 의료 합산 개호 서비스비로 환급을 받은 부분은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특별 양호 노인홈 입소에 드는 본인 부담에 대한 고액 개호 서비스비는 고액 개호 서비스비의 1/2상당을 차감합니다.

※ 본래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은 서비스라도 개호 복지사 등에 의한 가래 흡인 등이 실시되는 경우 본인 부담액 중 10%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문의 : 거주하시는 지구를 담당하는 세무서

고령자의 소득세 · 주민세(시민세 · 현민세)의 장애인 공제

신체장애인 수첩 등을 교부받은 분 외에 만 65세 이상이며 다음 ①~⑦에 해당하시는 분은 복지보건센터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장애인 공제 | 특별 장애인 공제 |
|--------------|--|--|
| 대상자 | ①신체 장애인(3~6급)에 준하는 분 ②치매(경도 · 중도)에 준하는 분 ③지적 장애인(경도 · 중도)에 준하는 분 | ④신체 장애인(1 또는 2급)에 준하는 분 ⑤치매(중증)에 준하는 분 ⑥지적 장애인(중증)에 준하는 분 ⑦6개월 정도 이상 와상 상태로 식사·배출 등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
| 소득세 공제액 | 소득 금액에서 27만엔 | 소득 금액에서 40만엔 |
| 시민세·현민세의 공제액 | 소득 금액에서 26만엔 | 소득 금액에서 30만엔 |

※ 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배우자 및 납세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그 밖의 친족 중 어느 한 분과 항상 동거하고 있는 특별 장애인인 경우는 공제액이 소득세 75만엔, 주민세 53만엔이 됩니다.

문의 : 거주하시는 지구를 담당하는 세무서(소득세),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주민세), 고령 · 장애 지원과(인정)

배리어 프리 개수 공사를 실시한 주택에 대한 세금 감액

요개호 또는 요지원으로 인정된 분 및 장애가 있는 분이 배리어 프리 개수 공사를 한 경우에 고정 자산세, 소득세가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정 자산세 감액) 일정 배리어 프리 개수 공사를 실시하여,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면 고정 자산세가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세무과에서 배포하고 있는 홍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문의 : 구청 세무과

(소득세 특별 공제) 소득세의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지구를 담당하는 세무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 : 거주하시는 지구를 담당하는 세무서

대형 쓰레기 처리 수수료 감면

- ① 요개호4 또는 5로 인정된 만 65세 이상인 분이 속한 세대
 - ② 대형 쓰레기를 직접 반출하기 어려운 혼자 사는 고령자(만 70세 이상)분 가운데 복지보건센터장이 인정한 분
- 감면내용 : 1세대당 연간 4개(4월 ~ 다음 해 3월)까지 대형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문의 : 대형쓰레기 접수센터

신청 : 접수기간 월~토요일(공휴일 포함) 오전 8:30~오후 5:00

※ 단, 12월 31일~1월 3일 동안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수도요금 ·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재택에서 요개호4 또는 5로 인정된 분이 있는 세대는 수도국에 감면 신청을 하면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기본요금 상당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등에 입소, 입원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 : 수도국 고객 서비스센터 TEL.045-847-6262 FAX.045-848-4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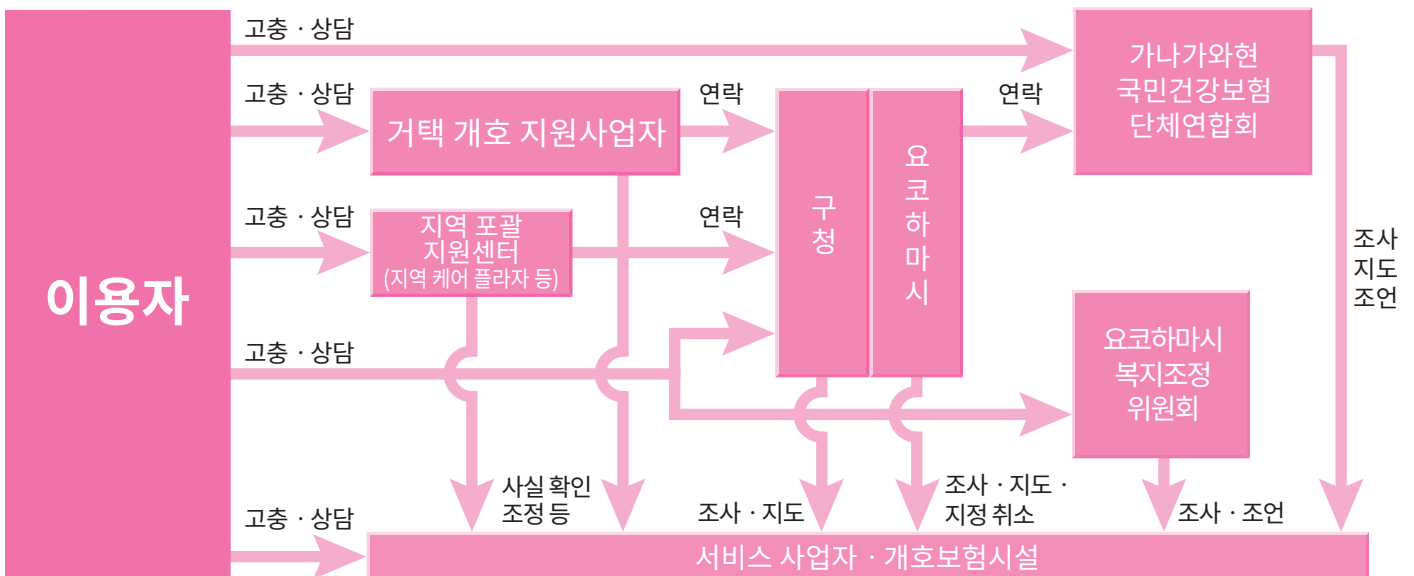
고충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에 불편 및 불만이 있는 경우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하거나 고충을 신고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상담은 가까운 창구로

- 각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먼저 그 사업자의 상담 창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서비스 사업자는 고충이 발생한 경우는 성실하게 대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케어 플랜을 작성한 거택 개호 지원사업자에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거택 개호 지원사업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선 요청을 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등의 조정을 합니다.
- 또한 지역 케어 플라자 등의 지역 포괄 지원센터 및 구청 고령·장애 지원과 창구에서도 고충·상담에 대응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고충 대응(요코하마시)



2 고충 신고방법

- 상기의 상담만으로는 충분한 해결책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코하마시 또는 필요에 따라 가나가와현 국민건강보험 단체연합회에 '고충 신고서'를 제출하여 법령에 따른 조사 및 지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문의 가나가와현 국민건강보험 단체연합회 개호 고충 상담과

TEL. 045-329-3447 FAX. 0570-033-110

전국공통번호 0570-022-110

- 요코하마시에서는 중립적인 제3자 기관인 '요코하마시 복지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요코하마시의 복지 보건 서비스에 관한 시민의 고충 상담을 받고 필요한 조사·조정을 실시하여 복지 보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합니다.

문의 요코하마시 복지조정위원회 사무국(건강복지국 상담조정과)

TEL. 045-671-4045 FAX. 045-681-5457

문의

■ 요코하마시 콜 센터 개호 보험에 관한 사항

전화 045-664-2525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365일 연중무휴

FAX 045-664-2828

e-mail callcenter@city.yokohama.jp

■ 각 구의 고령·장애 지원과 요개호 인정·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 구 | 전화번호 | FAX번호 | 구 | 전화번호 | FAX번호 |
|------|--------------|--------------|------|--------------|--------------|
| 쓰루미 | 045-510-1770 | 045-510-1897 | 가나자와 | 045-788-7868 | 045-786-8872 |
| 가나가와 | 045-411-7019 | 045-324-3702 | 고호쿠 | 045-540-2325 | 045-540-2396 |
| 니시 | 045-320-8491 | 045-290-3422 | 미도리 | 045-930-2315 | 045-930-2310 |
| 나카 | 045-224-8163 | 045-222-7719 | 아오바 | 045-978-2479 | 045-978-2427 |
| 미나미 | 045-743-8184 | 045-714-7989 | 스즈키 | 045-948-2306 | 045-948-2490 |
| 고난 | 045-847-8495 | 045-845-9809 | 도쓰카 | 045-866-8452 | 045-881-1755 |
| 호도가야 | 045-334-6394 | 045-334-6393 | 사카에 | 045-894-8547 | 045-893-3083 |
| 아사히 | 045-954-6061 | 045-955-2675 | 이즈미 | 045-800-2436 | 045-800-2513 |
| 이소고 | 045-750-2494 | 045-750-2540 | 세야 | 045-367-5714 | 045-364-2346 |

■ 각 구의 보험연금과 피보험자 자격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

| 구 | 전화번호 | FAX번호 | 구 | 전화번호 | FAX번호 |
|------|--------------|--------------|------|--------------|--------------|
| 쓰루미 | 045-510-1806 | 045-510-1898 | 가나자와 | 045-788-7835 | 045-788-0328 |
| 가나가와 | 045-411-7124 | 045-322-1979 | 고호쿠 | 045-540-2349 | 045-540-2355 |
| 니시 | 045-320-8425 | 045-322-2183 | 미도리 | 045-930-2343 | 045-930-2347 |
| 나카 | 045-224-8316 | 045-224-8309 | 아오바 | 045-978-2336 | 045-978-2417 |
| 미나미 | 045-743-8235 | 045-711-5180 | 스즈키 | 045-948-2334 | 045-948-2339 |
| 고난 | 045-847-8425 | 045-845-8413 | 도쓰카 | 045-866-8449 | 045-871-5809 |
| 호도가야 | 045-334-6335 | 045-334-6334 | 사카에 | 045-894-8425 | 045-895-0115 |
| 아사히 | 045-954-6134 | 045-954-5784 | 이즈미 | 045-800-2425 | 045-800-2512 |
| 이소고 | 045-750-2425 | 045-750-2545 | 세야 | 045-367-5725 | 045-362-2420 |

■ 요코하마시 건강복지국

| 과 | 전화번호 | FAX번호 | |
|---------|--------------|--------------|---------------------------------|
| 개호보험과 | 045-671-4252 | 045-681-7789 | 개호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
| | 045-671-4256 | 045-681-7789 | 요개호 인정에 관한 사항 |
| | 045-671-4253 | 045-681-7789 | 피보험자 자격에 관한 사항 |
| | 045-671-4254 | 045-681-7789 | 보험료에 관한 사항 |
| | 045-671-4255 | 045-681-7789 | 보험 급부에 관한 사항 |
| 개호사업지도과 | 045-671-3413 | 045-681-7789 | 거택 서비스 사업소 지정·갱신에 관한 사항 |
| | 045-671-3466 | 045-681-7789 |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소 지정·갱신에 관한 사항 |
| | 045-671-3414 | 045-681-7789 | |
| | 045-671-2356 | 045-681-7789 | 거택 서비스, 지역 밀착형 서비스 감사·지도에 관한 사항 |
| | 045-671-3461 | 045-681-7789 | |
| 고령재택지원과 | 045-671-4129 | 045-681-7789 | 개호 예방에 관한 사항 |
| 고령시설과 | 045-671-3923 | 045-641-6408 | 시설 서비스에 관한 사항 |
| 장애기획과 | 045-671-3603 | 045-671-3566 | 장애가 있는 분에 관한 사항 |

가나가와 복지 정보 커뮤니티 홈페이지

<http://www.rakuraku.or.jp>

(독)복지의료기구(WAM NET) 홈페이지

<http://www.wam.go.jp/>

요코하마시 건강복지국 홈페이지 (고령자 복지 안내)

<http://www.city.yokohama.lg.jp/kenko/kourei/>

고령은 어디에 신고 하나요? / 문의

요코하마 시니어 볼런티어 포인트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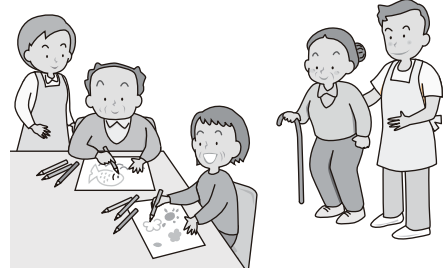
이미지 캐릭터
겐코호우시쿤(건강 봉사군)

만 65세 이상인 분이 개호시설 등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시면 포인트가 적립되고 환금 또는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연수회를 수강하신후 회원등록하시고 포인트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고령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갖고있는 지식과 경험을 지역에서 살릴 수 있습니다.

(2015년 4월 현재)
수용 시설 : 383시설
등록자 : 10,951명



- ★건강 증진, 개호 예방을 위하여!
- ★사회 참가, 삶의 보람 만들기를 위하여!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요코하마 시민(개호보험 제1호 피보험자)이시며 등록 연수회를 수강한 분

- 활동 종류**
- 특별 양호 노인홈 · 노인 보건시설 · 그룹 홈 등에서 실시되는 고령자분에 대한 활동
 - 지역 케어 플라자에서 실시되는 활동
 - 육아 지원 활동
 - 병원 자원 봉사 활동
 - 장애인 지원 거점에서의 자원 봉사 활동

- 활동 사례**
- 레크리에이션 보조, 이용자의 대화 상대, 행사 보조 등의 자원 봉사 활동
 - 지역 케어 플라자 등에서 실시하는 배식 · 회식 서비스 등
 - 구청에서 실시하는 개호 예방 사업
- ※포인트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병원에 한합니다.

자원 봉사자의 목소리

- 자원 봉사자인 우리가 활력소를 얻고 있다
-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이 깊어졌다
- 자신의 존재감이 살아나 만족
- 생활에 의욕이 생겼다
- 포인트가 활동의 기록이 되므로 자극이 되고 있다
- 기부도 할 수 있어 좋다



- 등록하신 분에게 포인트 카드를 드립니다.
- 1회 활동(약 30분 이상 활동)으로 200포인트가 적립됩니다.
- 1000포인트 이상 적립되면 환금 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환금 상한 1일 200포인트, 연간 8000포인트).

(2015년 4월 현재)



★앞으로 참가하시는 분을 위해서 월 2회 정도 등록 연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정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요코하마 시니어 볼런티어 포인트 사무국 (평일 9:00~18:00)
(공익사단법인 가나가와 복지 서비스 진흥회) 전화 045(671)0296 FAX 045(671)0295